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

#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11
4. 정치	13
5. 주요산업	15

## II. 무역

1. 수출입	16
2. 한국과의 수출입	25
3. 수출 유망항목	28
4. 무역협정	32
5. 수입규제 및 관세	34
6. 통관 · 물류	41

## III. 투자

1. 투자환경	46
2. 외국인직접투자	51
3. 한국기업 투자	53
4. 투자진출방식	58
5. 외환	64
6. 노무	66
7. 세무	69
8. 지식재산권	71
9. 청산 및 철수	72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74
2. 비즈니스 에티켓	77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80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80

5.출입국 안내	83
6.유관기관	86
7.물가정보	88
8.출장정보	92
9.생활정보	94
10.KOTRA 무역관 안내	104
11.전시회 정보	112
	113

# I. 일반

## 1. 국가개요

###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뉴질랜드(New Zealand)
면적	269,036 km <sup>2</sup> (자료원 : 뉴질랜드 국토정보원, 2023.4. 기준 최신)
수도	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5,305,600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24.10. 기준 최신)
민족(인종)	유럽인 67.8%, 마오리 17.3%, 아시아인 17.3%, 태평양 도서국 8.9%, 기타 1.9%
언어	영어, 마오리어
종교	기독교(37.0%), 힌두(2.6%), 이슬람(1.3%), 기타 여러 종교 및 무교
기후	온난 해양성 기후(12~2월 평균 20~25도, 6~8월 평균 12~16도)
국가원수	왕: 찰스 3세 (Charles III) 총독: 신디 키로 (Cindy Kiro)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 2. 한국과의 관계

###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 국교 수립일

1962-03-26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2022-05-01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와 기후 행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협정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2022-03-01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2022-01-01	뉴질랜드와 호주를 비롯하여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까지 총 15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타결한 협정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한국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DEPA)	2021-01-07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한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타결한 협정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2018-12-30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역내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타결한 협정	
한-뉴 FTA	2015-12-20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 무역 협정	

관세상호인정협정	2011-06-01	뉴질랜드와 한국의 양국 관세청으로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뉴질랜드와 한국의 수출 업자들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	
영화공동제작협정	2008-09-01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영화 제작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	
군수협력협정	2007-11-05	한국과 뉴질랜드가 군사 장비와 물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의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	
농림부간협력약정	2007-04-26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	
경찰협력약정	2006-06-02	범죄와의 효율적인 싸움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기법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	
영화공동제작 약정	2005-11-07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시청각 산업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증진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약정	
범죄인인도조약	2001-04-15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에 도피하여 있는 범죄자를 기소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상대국에 인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양국간 공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	2000-11-20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방산물자의 품질 보증을 강화하며,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을 증진시키는 협정	
형사사법공조협정	2000-03-15	범죄 수사 및 사법 처리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	
취업관광사증협정	1999-05-10		
과학기술의정서	1997-09-08		

임업협력협정	1997-04-07		
사증면제협정	1994-08-01		
항공협정	1993-08-16		
이중과세방지협정	1981-11-01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	1978-12-01		
어업협정	1978-03-15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	1967-07-10		

## 한국교민 수

35,664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 정치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4.9.4) 개최
  - 윤석열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 한국과 뉴질랜드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24.4.4) 개최
  - 조태열 외교장관은 2024년 4.4.(목) 브뤼셀에서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양국 관계, 경제-통상협력, 지역-국제무대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에서 한-뉴질랜드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였다.
-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 2023년은 한국과 뉴질랜드가 수교를 맺은 지 61주년인 해로, 양국은 60년간 경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견고한 정치, 안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장관급을 포함한 양국정부 대표부서 간 회의가 정례화되어있다.
- 2023 한-태평양 정상 회의, 뉴질랜드 외무장관 참석
  - 나나니아 마후타(Nanaia Mahuta) 외무장관은 '23.5.28에 한국에서 열린 한-태평양 정상 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개발 협력, 해양과 수산업 등 뉴질랜드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해양 구역 보존' 에 관하여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였다.
- 2021 APEC 정상회담 (의장국 뉴질랜드, 온라인 개최)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초청으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 중립 기술 경험 지원·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을 향해서는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뉴질랜드 국민 방문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뉴질랜드 국민 방문(2018년 12월 2일~12월 4일)하여 정상회담,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uckland를 경유하여 12월 3일 동포 간담회, 12월 4일 Jacinda Ardern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수행하였다.

- 양 정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 및 사회보장협정을 연장하여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Jacinda Ardern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지난 1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의를 표하며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개최(21차)

- 2020년 11월 양국 외교당국 화상회의를 통해 한-뉴질랜드 정책 협의회 개최해 코로나19 대응과 방위산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측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아오테아로아함)을 수주해 지난 6월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양국 간 우호적인 방산 협력체계가 갖춰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뉴질랜드 해양경비함 사업 등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의 뉴질랜드 입국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원활한 경제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 요건하에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뉴질랜드 입국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 경제

○ 2024 뉴질랜드-한국 재생에너지 협력 세미나 개최

-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공동주최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재생에너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뉴질랜드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투자 기회가 소개되었다.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장기적인 산업 협력과 그린 수소 분야에서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개최

- 2021년 5월 12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 협력성과와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한-뉴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상호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교역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 한국과 뉴질랜드는 농수산, 과학기술, 교육,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기술과 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상호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의 수소 경제로드 맵과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 정책 간 접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원칙 하에 코백스 퍼실리티에서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국의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은 물론,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뉴질랜드 경제사절단 방한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에 대한 협력

- 2019년 11월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4D기술, 건강로봇공학, 농업기술, 디지털 영화기술 및 공동 남극 연구 및 수소 경제 등 신산업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분야에서 첨단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뉴질랜드 정부 및 뉴질랜드 에너지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청정 수소 교역 개발에 대한 협업 의향서를 한국 측 컨소시엄에 전달했다.

○ 한-뉴질랜드 방위산업분야 협력

- 2019년 6월 3일 방위사업청은 뉴질랜드 국방부와 '군용물자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당시 군수분야 물자협력 약정은 양해각서 성

격의 합의문으로, 양국의 방위산업분야 관계 발전, 군용 물자 공동생산 등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약정 체결은 한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뉴질랜드와의 방위산업분야 경제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현대중공업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 인도

- 2020년 6월 10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이 울산에서 출발해 뉴질랜드에 공식 인도되었다. 출항식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방위사업청 성일 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하였다.

-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 해군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 함정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은 뉴질랜드 해군의 해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남극에서 작전 수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 전하였다.

## 문화

○ 2024 K-Culture Festival 개최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4 K-Culture Festival' 행사를 7월 13일에 수도인 웰링턴시 Michael Fowler Centre에서 개최하였다. 행사 주제는 '키위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축제(다문화화합)'으로 마오리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무용, 한국 합창단 공연에 이어 K-pop 경연대회, K-트로트 경연대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 밖에 부스체험으로는 한복 체험 부스, 즉석 사진 부스, 한식 부스, K-뷰티 부스, K-pop 앨범 판매 부스 등과 함께 각보 전시회 및 공예 체험 부스까지 현지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했다. 현지에서 높아지는 K-Culture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와 먹거리 등에 대한 인기를 몸소 실감할 수 있는 행사였다.

○ 2023 한인의 날

- 해마다 열리는 한인의 날 행사가 2023년에는 4월 15일에 노스쇼어 Event Stadium 에서 개최되었다. 한인의 날 행사는 1부, 2부로 나뉘어져 1부에는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 리듬체조, 부채춤, 힙합댄스 등과 2부에는 전통차 시음, 한국 문화 체험, K-pop dance 등으로 이루어졌다. 뉴질랜드 이민성 장관 마이클 우드도 축사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다양한 한국 문화와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20여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악기 체험, 한글 서예 체험, 전통 차 시음 뿐만 아니라 한복 종이 접기, 압화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한인 동포와 현지인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던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2022 K-festival 개최

- 정부나 기관의 주최가 아닌 민간인 주최로 열린 K-festival 은 올해로 2회를 맞아 2022년 9월 10일 The Trust Arena 에서 개최되었다. K-festival은 2021년 처음 개최된 이벤트로서 "Better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K-pop과 K-food 등 뉴질랜드 내에서 한류를 더 전파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페스티벌은 작년 첫해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말 그대로 뉴질랜드 내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해는 "Happy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할 때 더 행복한 세계를 꿈꾼다는 취지로 축제 곳곳에 한국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 2020 K-Culture Festival 개최

- '2020 K-Culture Festival' 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K-POP 콘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비대면으로 우리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널리 알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019 K-Culture Festival 개최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9 K-Culture Festival' 행사를 7월 6일에 수도인 웰링턴시 Michael Fowler Centre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최신 K-Culture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릴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통 한복 패션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 가진 아름다움을 소개하였으며 최근 더욱 뜨거워진 한류의 열풍을 느낄 수 있는 K-POP 콘서트와 비보이 퍼포먼스를 통해 현지 뉴질랜드 젊은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하이라이트 행사로 펼쳐진 K-POP 경연대회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여러 팀이 참여 열린 경쟁을 펼치기도 했으며, 불고기 떡볶이 등의 전통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와 유망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오클랜드 무역관 홍보 부스는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사

전에 SNS 등을 활용한 행사 프로그램 소개와 각종 영상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보다 많은 현지인의 참여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3. 경제현황

####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2.1	5.6	2.3	1.1	
명목GDP (십억\$)	210	248	257	266	
1인당 GDP (PPP, \$)	41,642	43,301	50,535	52,552	
1인당 명목 GDP (\$)	41,430	48,420	49,850	50,430	
정부부채 (% of GDP)	31.6	28.7	30.8	32.3	
물가상승률 (%)	1.4	3.9	7.2	5.7	
실업률 (%)	4.9	3.8	3.3	3.7	
수출액 (백만\$)	38,915	42,149	45,331	41,403	
수입액 (백만\$)	37,147	44,341	50,172	47,318	
무역수지 (백만\$)	1,768	-2,192	-4,841	-5,915	-
외환 보유고 (백만\$)	20,383.07	23,585	22,931	24,478	
이자율 (%)	0.25	0.75	5.25	5.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64	1.39	1.57	1.63	

<자료원 : IMF, EIU 국가보고서, 월드뱅크>

#### 나. 경제 동향

- (GDP) 뉴질랜드 GDP 성장률 '24년 1%, '25년 2.5% 전망
  - 뉴질랜드 경제는 팬데믹 시기의 내수 주도 회복 이후 '24년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태이나 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경제가 재균형을 맞추고 있다.
  - 뉴질랜드 경제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민간 소비가 위축되어 2024년 1%대의 미미한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약 2.5%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실업률) '24년 2분기 실업률 4.6%(전 분기 대비 +0.2pp)
  - 뉴질랜드는 긴 코로나 19 국경 통제로 인하여 2020년 중반 이후 2023년 중반까지 기술 인력 부족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실업률은 빠르게 낮아져 역대 최저 수치인 3.2%를 보였다.
  - 이후 국경 완전 재개방 이후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뉴질랜드 실업률은 '24년 2분기 현재 4.6%이다.
- (물가 상승률) '24년 2분기 물가 상승률 3.3%(전 분기: 4.0%)
  - 물가 상승률은 7.3%의 정점('22.2분기)에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통화 정책 위원회의 목표 범위(1-3%)를 상회하고 있다.
- (기준 금리) 추가 빅컷 단행, 현재 OCR 4.75% ('24.10.9)
  -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1년 말부터 0.25%이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5월 기준 금리 5.5%에 도달한 이후 동결하였었다.
  -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경제 둔화를 고려하여 2024년 8월 14일 25bp를 첫 인하한 이후 10월 9일 50bp를 추가 인하하여 현재 기준 금리는 4.75%이다.

## 다. 경제 전망

- (경제 성장률) OECD는 뉴질랜드의 2025년 전망에 대해 완만한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내수 회복, 수출 증가로 인해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EIU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미미한 경제 성장이 뉴질랜드 수출 부문의 강력한 반등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최근 체결된 FTA 및 다자간 무역 파트너십 참여로 인해 다른 시장에서 수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인플레이션) OECD, IMF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2025년 인플레이션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약 2-3% 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통화 정책 효과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환율) 미국 달러화 대비 뉴질랜드 달러 평균 환율은 2024년에 NZ\$1.64:US\$1였으며, 2024년 중반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 정치

### 가. 정치체제

- 정치 제도 : 입헌 군주국
- 국가원수 : Charles III
- 총독 : Dame Cindy Kiro (임기 5년)
- 총리 : Christopher Luxon (제42대 총리 취임)
- 의회 : 양원제로 출원하였으나 1951년 이후 단원제로 변경, 임기 3년
  
- 주요 정당, 의석, 당수 ('23년 11월 3일 기준)
  - 국민당(National, 49석), 당수: Christopher Luxon
  - 노동당(Labour, 34석), 당수: Chris Hipkins
  - 녹색당(Green, 14석), 당수: James Shaw, Marama Davidson
  - 행동당(ACT, 11석), 당수: David Seymour
  - NZ 퍼스트당(NZ First, 8석), 당수: Winston Peters
  - 마오리(Maori, 6석), 당수: Rawiri Waititi, Debbie Ngarewa Packer
  
- 집권당 구조
  - 국민당이 2023년 10월 14일 54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당이 되었다.
  - ACT 당과의 연합에서 총 59석(국민당 48석, ACT당 11석) 으로 과반에 실패하여, 8석을 얻은 NZ 퍼스트당과의 3당 연합 정부를 형성했다.

### 나. 최신동향

2020년 재집권에 성공했던 노동당의 6년 임기가 끝나고 2023년 54대 총선에서 국민당이 6년만에 정권 탈환에 승리하였으며, 노동당은 현행 대표제 하에서 65석을 확보한 최초의 다수파 정부였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수를 34석 확보에 그쳤다. 국민당 당수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이 제 42대 총리에 임명되었다. 국민당은 ACT당(11석) 및 뉴질랜드 퍼스트당(8석)과 연합 정부를 형성했다. 새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며 이외 주택, 기후변화 대응, 법과 질서 등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총리가 '24년 6월 말까지 달성할 36가지 우선순위를 발표(해외 건축 자재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Medsafe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 등) 한 바 있다.

###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균형 있는 관계 유지
  -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이자 뉴질랜드 전체 수출입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경제적 유대 관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 호주, 영국, EU 등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하며 무역 성장 기대
  - 뉴질랜드와 호주는 무역, 경제, 외교 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호주는 뉴질랜드의 상위 무역국 3위 안에 드는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정되는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을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AANZ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등의 협상 등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022년 뉴질랜드-영국 자유 무역 협정(NZ-UK FTA) 은 2023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향후 15년 안에 단계별로 모든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이 FTA 로 뉴질랜드 수출 기업은 약 NZ\$ 1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뉴질랜드와 EU의 자유무역 협정(NZ-EU FTA) 은 2024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본 협정으로 뉴질랜드-EU간의 무역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뉴질랜드-아랍에미리트(UAE) 무역 협정 체결
  - 뉴질랜드는 UAE와 2024년 5월 6일 FTA의 일환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시작한 후 4개월만인 9월 26일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빠른 협정이며, 발효 즉시 뉴질랜드 수출의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 한국과 뉴질랜드의 경제 및 외교 협력 강화
  -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한국은 뉴질랜드의 5위 교역 대상국이다. (수출 5위, 수입 4위)
  -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도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아세안 지역 포럼, 유엔 등에서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 라. 정책 · 법령

뉴질랜드 법률 체계는 상당 부분 영국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 법제 정보 센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률에는 의회법(Acts of Parliament 또는 Statutes), 위임법률(Legislative Instruments 또는 2013년 8월 5일 전에는 Statutory Regulations), 그리고 기타법률 문서(Other Instruments)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뉴질랜드 의회법은 다시 대부분의 법률이 속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법(Public Acts), 특별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역법(Local Acts), 그리고 특별한 이해나 혜택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사법(Private Act) 3가지로 분류된다.

뉴질랜드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법령들은 아래와 같다.

- 1986 헌법(Constitution Act 1986)
-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 1994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94)
- 2013 특허법(Patents Act 2013)
- 2017 계약 및 상업에 관한 법률(The Contract and Commercial Law Act 2017)
- 2023 심가간 기상 비상 복구 법률 (Severe Weather Emergency Legislation Act 2023)

<54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 집권 이후 변화된 주요 법령>

- 공정 임금 협약법(Fair PAY Agreements Act 2022) 폐지
- 자연 및 건축 환경법(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Act 2023) 과 공간 계획법(Spatial Planning Act 2023) 폐지
- 수도세법(Three Waters Act) 폐지
- 90일 수습기간 (90 days work Trial) 복원하는 고용법 개정
- 담배 규제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mendment Act 2022) 폐지

\*참고

뉴질랜드 국가 법령 정보 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t.nz/>)

## 5. 주요산업

### 가. 개요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유제품 및 양고기 수출국 중 하나로 농업은 뉴질랜드 상품 수출 수입의 약 80% 이상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반면, 제조업은 지리적 취약성으로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며 자동차, 석유화학, 공산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중 식품 가공, 목재 가공 분야가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관광업도 뉴질랜드의 GDP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관광 산업은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숙박, 운송, 요식업 등 다방면으로 뉴질랜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외 관광 홍보를 통해 해외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의 완전한 회복에 힘쓰고 있다.

###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 1차 산업 (Primary Industries)

1차 산업은 총 GDP의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이 무역 수출의 80% 이상 가까이 될 만큼 나라의 중요한 산업이다. '23년 기준 농업·어업·수렵 부분이 전년대비 -2.7%, 광업이 -7.6% 하락하였으나 '식품 및 섬유 부문(Food and fibre sector)'의 수출은 22/23년(6월말기준) NZ\$ 573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차 산업부(MPI)의 'Situation and outlook for primary industry'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식품 및 섬유(Food and fibre sector)부문'은 총 GDP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7만명(전체 고용의 13.8%)의 인력이 관련 산업에 종사중이다. 이 '식품 및 섬유' 분야는 유제품(Dairy), 고기 및 양모(Meat and wool), 임업(Forestry), 원예(Horticulture), 해산물(Seafood), 곡식(Arable), 가공식품 외 기타(Processed food and other products)으로 분류된다. 하위 산업 중 하나인 유제품(Dairy)은 연간 꾸준히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2/23년 기준 NZ\$ 25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또한 원예(Horticulture)는 와인, 키위, 사과 및 배 등 연간 NZ\$ 60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으며, 22/23년에는 NZ\$ 7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 2차 산업 (Goods-producing Industries)

2차 산업은 총 GDP의 약 19%를 차지하는 산업군 (제조업은 2차 산업 GDP의 약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건설 분야는 약 37% 비중 차지)이다. 작은 내수 시장으로 자동차, ICT, 석유화학, 공산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식품 및 목재 가공 분야는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목재 산업이 발달하였고 이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하다.

#### ○ 3차 산업 (Service Industries)

3차 산업은 총 GDP의 약 66%를 차지하는 산업군으로 '23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에서 임대 및 부동산 서비스가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3차 산업은 관광업,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로 수많은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업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영어권 국가이며 고등교육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 국제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유학 목적지 중 하나로 이런 교육 서비스도 중요한 경제 수입원 중 하나이다.

## II. 무역

### 1. 수출입

#### 가. 개요 및 동향

뉴질랜드는 낙농품과 목재, 육류, 과일 등의 1차 산업 가공품을 주로 수출하고, 석유화학, 원자로 및 보일러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있다. 전체 교역량은 코로나로 주춤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1차 산업은 굳건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뉴질랜드 전체 교역량은 2022년 대비 7% 감소하며, US\$ 8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수출이 US\$ 414억 달러, 수출 US\$ 473억 달러로 무역수지 US\$ -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나. 국가별 수출입

##### - 국가별 수출입 현황

뉴질랜드의 상위 교역국으로는 중국,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이며 이어 호주, 미국,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2023년 통계 기준 뉴질랜드의 수출, 수입국 1위이며 상시 약 25%의 무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3년 기준 비중 수출 27%, 수입 21%)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수출국 5위, 수입국 4위이다.

##### - 수출 상위 10개국

######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0,863,051,094
2	호주	5,328,716,982
3	미국	4,342,781,943
4	일본	2,326,575,010
5	한국	1,117,257,795
6	영국	996,841,234
7	대만	873,762,975
8	싱가포르	796,353,517
9	독일	736,526,922
10	홍콩	706,419,663

<자료원 : UN Comtrade>

######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4,316,679,174

2	호주	5,607,796,499
3	미국	4,811,807,142
4	일본	2,567,757,465
5	한국	1,425,702,840
6	영국	1,029,315,806
7	대만	1,015,888,265
8	인도네시아	927,704,869
9	태국	850,291,227
10	싱가포르	821,815,093

<자료원 : UN Comtrade>

###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3,401,258,909
2	호주	5,614,709,217
3	미국	5,072,519,917
4	일본	2,813,473,746
5	한국	1,815,183,862
6	인도네시아	1,325,907,224
7	싱가포르	1,170,635,557
8	대만	1,123,151,222
9	영국	958,838,697
10	태국	936,362,181

<자료원 : UN Comtrade>

###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1,875,725,002
2	호주	5,471,016,289
3	미국	5,165,270,454
4	일본	2,484,626,140
5	한국	1,462,034,336

6	싱가포르	1,042,767,198
7	인도네시아	974,831,912
8	영국	948,959,502
9	대만	947,431,078
10	말레이시아	820,372,87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8,327,369,883
2	호주	4,435,326,481
3	미국	3,606,302,800
4	일본	2,088,642,918
5	한국	1,779,749,276
6	독일	1,761,880,866
7	태국	1,486,286,470
8	싱가포르	1,193,419,042
9	말레이시아	1,071,565,976
10	아랍에미리트	986,965,50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1,836,611,317
2	호주	5,632,687,004
3	미국	4,292,112,994
4	일본	3,180,113,840
5	독일	2,424,360,102
6	태국	2,271,645,418
7	한국	2,259,150,848
8	아랍에미리트	1,835,285,209

9	싱가포르	1,656,280,586
10	말레이시아	1,313,278,20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2,737,421,749
2	호주	6,180,302,373
3	미국	4,912,675,082
4	한국	3,594,197,225
5	일본	3,537,679,725
6	싱가포르	3,441,168,857
7	독일	2,444,985,986
8	태국	2,273,249,987
9	말레이시아	1,725,911,665
10	영국	1,249,533,451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0,514,232,646
2	호주	5,502,818,611
3	미국	4,959,524,556
4	한국	3,791,147,936
5	일본	3,533,277,599
6	싱가포르	2,778,653,347
7	독일	2,412,363,906
8	말레이시아	2,048,744,328
9	태국	1,849,387,742
10	영국	1,352,426,98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뉴질랜드의 상위 수출품으로는 유제품, 육류, 목재, 과일, 버터 등이 대표적이며, 상위 수입품으로는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통신 장비, 건설 중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693,359,181
2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2,145,716,268
3	020230	뼈 없는 것	1,883,482,736
4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73,921,864
5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562,771,451
6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146,136,104
7	0402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014,103,958
8	040510	버터	997,431,498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20,517,991
10	040590	기타	877,165,581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5,869,590,590
2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2,434,534,481
3	020230	뼈 없는 것	2,212,930,806
4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3,327,255
5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783,343,149
6	040510	버터	1,179,942,665

7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066,463,494
8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029,663,444
9	190110	영유아 · 어린이용 조제 식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970,329,191
10	040590	기타	861,037,006

<자료원 : UN Comtrade>

##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5,372,124,456
2	020230	뼈 없는 것	2,375,550,773
3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2,107,092,274
4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774,820,751
5	040510	버터	1,595,706,026
6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47,092,825
7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415,852,003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10,552,525
9	040590	기타	1,204,648,986
10	190110	영유아 · 어린이용 조제 식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86,880,208

<자료원 : UN Comtrade>

##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530,778,971
2	020230	뼈 없는 것	2,105,465,766
3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1,747,956,097
4	040510	버터	1,530,843,028
5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13,217,956
6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502,967,529
7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333,224,993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97,679,411
9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76,946,426
10	040590	기타	1,053,546,367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63,352,354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1,108,367,668
3	271019	기타	900,302,671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21,696,112
5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07,579,449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88,615,262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45,644,147
8	300490	기타	532,562,852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523,539,257
10	210690	기타	397,557,10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49,303,44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1,761,387,814
3	271019	기타	1,074,186,836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984,653,231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78,044,538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63,048,96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34,708,809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625,356,640
9	300490	기타	618,794,221
10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84,774,300

<자료원 : UN Comtrade>

##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3,628,657,009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864,356,463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15,336,551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09,589,996
5	300490	기타	764,815,934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46,205,659
7	851713	스마트폰	721,526,818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715,475,299
9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704,625,147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73,438,065

<자료원 : UN Comtrade>

##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800,178,988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217,915,263
3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964,668,023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39,092,296
5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927,644,698
6	300490	기타	830,915,754

7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785,038,794
8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768,830,671
9	851713	스마트폰	701,496,203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88,025,036

<자료원 : UN Comtrade>

## 2. 한국과의 수출입

### 가. 개요 및 동향

○ 2022년 뉴질랜드 수출입 총 교역 규모는 약 US\$ 955억 달러(수출: 453억, 수입: 502억)로 상위 교역국은 중국,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등이다.

- 뉴질랜드 수출) 1위 중국: US\$ 126억 달러(27.9%), 2위 호주: US\$ 54억 달러(12.1%), 3위 미국: US\$ 49억 달러(10.9%)
- 뉴질랜드 수입) 1위 중국: US\$ 114억 달러(22.7%), 2위 호주: US\$ 56억 달러(11.2%), 3위 미국 : US\$ 45억 달러(9.1%)

○ 2023년 뉴질랜드 수출입 총 교역 규모는 약 US\$ 887억 달러(수출: 414억, 수입: 473억) 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상위 교역국은 중국, 호주, 미국, 한국, 일본 등이다.

- 뉴질랜드 수출) 1위 중국: US\$ 110억 달러(26.6%), 2위 호주: US\$ 53억 달러(13.0%), 3위 미국: US\$ 50억 달러(12.2%)
- 뉴질랜드 수입) 1위 중국: US\$ 87억 달러(20.8%), 2위 호주: US\$ 51억 달러(10.8%), 3위 미국: US\$ 47억 달러(9.9%)

###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한국은 뉴질랜드의 교역국 상위권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나라이다. 2023년 한국은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국가 5위, 주요 수입 국가 4위를 기록했다. 2023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 교역 규모는 US\$ 28억 5천만 달러, 수입 교역 규모는 US\$ 17억 4천만 달러로 약 US\$ 11억 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 한국의 對 뉴질랜드 2023년 전체 교역 동향

- 한국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US\$ 28.5억 달러이고 수입은 US\$ 17.4억 달러로 US\$ 1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중 경유, 휘발유, 제트유 및 등유 등의 석유 제품이 약 59%의 비중을 차지하며 '22년 이후로 수출 증가 견인
- 그 외 기타 자동차, 승용차, 전기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15%, 건설 중장비가 5%, 철강이 4%의 비중을 차지함

○ 2024년 10월 마감 기준, 한국의 뉴질랜드 수출 교역 규모는 US\$ 25억 9천만 달러, 수입 교역 규모는 US\$ 13억 6백만 달러이다.

- (수출) 경유, 제트유 및 등유, 휘발유 등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승용차, 기타 자동차, 합성수지, 순이다.
- (수입) 낙농품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원유, 과실류 순이다.

####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1,463	1,182	281
2021	1,924	1,541	383
2022	3,490	1,856	1,634
2023	2,856	1,740	1,116
2024	2,597	1,306	1,29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한국의 뉴질랜드 수출 상위 5대 품목으로는 경유, 휘발유, 자동차, 도금 강판, 건설 중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뉴질랜드 수입 상위 대표 품목으로는 낙농품,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원목, 가축 육류, 과실류 등이 주를 이룬다.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1,063	0	1,062
2	1333	제트유및등유	285	0	285
3	1331	휘발유	627	0	626
4	7411	승용차	120	0	119
5	7419	기타자동차	96	0	95
6	2140	합성수지	37	0	36
7	8352	축전지	26	0	26
8	7251	건설중장비	55	0	54
9	6134	아연도강판	18	0	17
10	7412	화물자동차	11	0	11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1,110	0	1,110
2	1333	제트유및등유	469	0	469
3	1331	휘발유	426	0	426
4	7411	승용차	122	0	122
5	7419	기타자동차	38	0	38
6	2140	합성수지	32	0	32
7	8352	축전지	24	0	24
8	7251	건설중장비	21	0	21
9	6134	아연도강판	18	0	18
10	7412	화물자동차	14	0	1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243	낙농품	0	379	-379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272	-272
3	1310	원유	0	104	-104
4	0116	과실류	1	133	-133
5	0311	원목	0	189	-189
6	0221	가축육류	0	134	-134
7	2511	펄프	0	57	-58
8	1322	유연탄	0	67	-67
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	18	-17
10	0245	단백질류	0	57	-5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243	낙농품	0	208	-208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80	-180
3	1310	원유	0	155	-155
4	0116	과실류	0	152	-152
5	0311	원목	0	105	-105
6	0221	가축육류	0	93	-93
7	2511	펄프	0	52	-52
8	1322	유연탄	0	45	-45
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	41	-39
10	0245	단백질류	0	32	-3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3. 수출 유망품목

####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 개와 고양이 사료

HS CODE	2309.10	수입액 (US\$백만)	0.18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의 반려 동물 키우기 적합한 환경적 요소와 반려 인구 증가 등으로 성장하는 시장 분야</li> <li>- 동물 사료 중에서도 뉴질랜드 인구수 대비하여 개와 고양이의 반려 개체수가 높은 편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분야</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와 고양이의 프리미엄 사료 수요도 크게 증가</li> <li>- 오프라인에 집중되었던 그간의 시장과 다르게 E-commerce 의 성장으로 온라인 구매도 크게 늘어나며 한국 수출도 함께 성장</li> </ul>		
경쟁동향	호주가 시장 점유율 약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외 미국 20%, 태국15%, 프랑스9.6%, 캐나다9.2%, 중국2.7% 순이며 한국은 약 2% 차지함		
진출방안	인증, 통관 애로 등의 시장 장벽이 존재하는 분야지만 인기 품종 및 반려 동물 식품 시장 트렌드 변화 등을 읽고 대처할 필요 있음		

##### ○ 라면

HS CODE	1902	수입액 (US\$백만)	66.95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7.38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아시안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어 라면제품에 대한 관심 높아짐</li> <li>-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류프리미엄, SNS 매운맛 체험 등으로 한국 라면 인기</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인 가구와 혼자 공부하는 유학생이 많은 탓에 간편하게 조리하는 라면 수요 높음</li> <li>- 현지 메인스트림 슈퍼마켓에서도 한국 라면 꾸준히 판매되고 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와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점유율 40%</li> <li>- 한국 라면 최근 3년 사이 평균 US\$ 550만으로 12.7%의 시장점유율 나타냄</li> </ul>		
진출방안	안전한 한국 식품이라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운맛 라면을 활용한 아시안 마켓 공략뿐만 아니라 순한맛을 통한 메인스트림 공략 필요		

##### ○ 간편식

HS CODE	1904.90	수입액 (US\$백만)	9.9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16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코노미 수요 증가속에 외식보다 집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 트렌드 증가</li> <li>- 현지인들 보다 다양한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 한국식품에 주목</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가정간편식 수입액은 1,161만 미국달러로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li> <li>- 최근 아시안 시장의 성장 속에 우리 K푸드 수요도 라면, 김 외에도 만두, 컵밥이 등 다변화</li> <li>- 이미 현지에서는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활용한 K푸드 냉동 볶음밥 제조 및 판매되고 있음</li> </ul>		

경쟁동향	- 호주, 태국, 영국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 수입(80%의 높은 점유율). 다음으로 인도, 스페인, 대만산 간편식이 수입 * 7위의 한국제품은 '20년 15만 미국달러 수입
진출방안	- 현지 아시안 슈퍼마켓의 성장세 꾸준, 한인마켓 외 중국, 인도 등 아시안 마켓 적극 공략

#### ○ 조미김

HS CODE	2008.99	수입액 (US\$백만)	15.3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2.2
선정사유	- 조미김은 현지인에게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맛(Salty)과 가격에서 높은 만족도 - 반찬으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는 스낵으로 인식되어 많은 수요가 기대됨		
시장동향	- 조미김은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판매되고 있음 - 아시안 마켓 뿐만 아니라 현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서도 주류 소비층에게 유통됨		
경쟁동향	- 조미김은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중국과 태국은 스낵형태의 다양한 김제품 출시 - 일본의 경우는 전장김 형태의 스시용 김이 유통됨		
진출방안	- 조미김 관련된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통해 현지 확보된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제품공급 추진		

#### ○ 자동차 배터리

HS CODE	8507.20	수입액 (US\$백만)	25.5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71
선정사유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관련 부품 수요동반 상승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FTA를 통한 무관세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 제품임		
시장동향	- 현지 제조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의 저가 자동차 배터리가 높은 시장지배력 - 한국제품의 2018년 교역실적 4위로 전년비 47% 증가율을 보이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경쟁동향	-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는 주로 OEM 방식으로 유통 - 한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품질에 대한 평가 보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임		
진출방안	- 뉴질랜드인들은 높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DIY가 활성화돼 있으며, 비교적 교체가 간단한 자동차 배터리 역시 직접 소매점에서 구매해 교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 ○ 태양전지판

HS CODE	8541	수입액 (US\$백만)	79.06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2.38
선정사유	- 2035년까지 모든 전력원 재생에너지 교체추진 -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시장 수요 전망		

시장동향	-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얻으려는 일반가정 증가 -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기술과 장비개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 높은 태양전지판의 가격경쟁력 확보여부가 관건
경쟁동향	- 중국산 태양전지판이 수입물량의 43%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일본제품이 10% 비중 - 한국제품의 내구성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점차 상승
진출방안	- 현지 전력회사의 장기 사업 전략에 대한 파악 -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전시회를 적극 활용

○ 농기계

HS CODE	8432	수입액 (US\$백만)	52.8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1
선정사유	- 식량 무기화로 인한 뉴질랜드 농업의 확대 가능성. - 현지 농기계 전시회에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		
시장동향	일부 농기계 제조업체가 존재하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요의 대부분을 유럽, 미국 등 농기계 제조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경쟁동향	- 전세계 주요 브랜드가 뉴질랜드에 진출해있으며 유럽산과 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 현지 농업박람회인 Fieldays를 적극활용할 것. - 농업, 원예 및 임업 분야의 경우, 뉴질랜드 농부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체들과의 꾸준한 영업 필요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금융&middot;핀테크

선정사유	- 신금융 인프라 확보를 위해 핀테크 서비스 성장 - 금융업계 핀테크 플랫폼 도입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간 통합 추진 가속화
시장동향	- 현지 산업계를 중심으로 DT가속화 추세, 금융업 핀테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솔루션 개발 활기 - 정부 4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 투자 세금 인센티브 제도 운영
경쟁동향	- 현지 핀테크 관련 기업수 증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재무 솔루션 출시 - 하머니 쉐어지스, 피규어드 와 같은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꾸준한 성장
진출방안	현지 핀테크협회( <a href="https://fintechnz.org.nz">https://fintechnz.org.nz</a> ) 관련 산업의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협회를 활용한 협력사 발굴 및 핀테크 분야 혁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마케팅 추진 등 안정적인 시장 진출기반 확보

○ ICT 서비스

선정사유	뉴질랜드 정부는 7천만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Callaghan Innovation을 설립하여 ICT분야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
시장동향	2016년 이래로 2,473 개의 기업이 Callaghan Innovation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

경쟁동향	ICT 직종은 뉴질랜드에서도 이민이 용이한 장기부족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연간 약 3,410명 이상의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진출방안	현지에도 ICT분야의 틈새시장에서 작지만 강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보를 통한 투자형태로 진출

○ 물류

선정사유	-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지리적 위치 - 제조업이 취약하고 1차 산업이 발달하여 수출 및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물류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시장동향	최근 중국은 중국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로의 기본 물동량에 힘입어 물류산업 규모의 경계를 이루며, 자국 제품의 중남미 공급 허브로서 뉴질랜드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중임
경쟁동향	지역적 특색으로 선박 물류가 발달해 있으며 Main Freight 등 국제적 선박기업이 주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선박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3차 벤더 또한 발달해 있음
진출방안	국내 업체는 한국-뉴질랜드간 물류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최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아시아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건설

선정사유	54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의 부동산 친화적인 정책 재도입으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해외산 건축 자재 제한을 완화할 방침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건설 중장비, 철강 제품들 뿐만 아니라 건설 서비스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중앙정부 매 3년 주기 국토교통개발(National Land Transport Programme) 프로젝트 검토 및 추진 각종 건설, 건축 프로젝트에 일본 등 다수의 세계 기업이 입찰하고 있음
경쟁동향	- 플레처 건설 등 뉴질랜드 기업이 주로 프로젝트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나, 난이도 높은 공사의 경우 호주 및 유럽 건설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짐
진출방안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2차, 3차 벤더의 역할로 인지도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 할 수 있음

## 4. 무역협정

###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뉴질랜드-호주 Closer Economic Relations(CER)	호주	1982-12-01	1983-01-01	기존 뉴질랜드-호주 FTA 대체
뉴질랜드, 싱가포르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싱가포르	2000-11-14	2001-01-01	
뉴질랜드, 태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태국	2005-04-20	2005-07-0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P4)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2005-06-03	2006-05-28	
뉴질랜드-중국 FTA	중국	2008-04-07	2008-10-01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2009-10-26	2010-08-01	
뉴질랜드, 홍콩, 중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홍콩, 중국	2010-03-29	2011-01-01	
뉴질랜드-한국 FTA	한국	2015-03-23	2015-12-20	
뉴질랜드-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한국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DEPA)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한국	2020-06-12	2021-01-07	
뉴질랜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ASEAN)10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2020-11-15	2022-01-01	
뉴질랜드-United Kingdom FTA	UK	2022-02-28	2023-05-31	

뉴질랜드-EU FTA	EU	2023-07-09	2024-05-01	
뉴질랜드-UAE CEPA	UAE	2024-09-26		체결 완료 상태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FTA list in force)>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뉴질랜드-인도 FTA	인도	2010년 초기협상이 열렸으며 2015년, 2016년 까지 후속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후 추가 협의 진행 없음	
뉴질랜드-RBK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10년 초기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우크라이나와 크라메니아 사태로 현재 협의 중단 상태	
뉴질랜드-중국 FTA Upgrade	중국	2008년 FTA 협정 이후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3배 이상 증대됨에 따라 기술, 환경, 서비스 분야 등 협정 영역 확대 중 2019년 10월 9번째 라운드 협상이 북경에서 진행됨 2021년 1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체계	
뉴질랜드-태평양 동맹 FTA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2011년 부터 추진되어 협상 진행 중 2018년 11월 최고 협상담당자 페루 리마에서 협상 진행한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협상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Timeline for trade negotiations)>

## 5. 수입규제 및 관세

###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72104931,72104939, 72106110,72106120, 72106130,72106190, 72106910,72106920, 72106930,72106990, 72109011,72122010, 72122020,72123001, 72123021,72125009, 72126001,72251110, 72251190,72251910, 72253001,72254001, 72254009,72255001, 72259110,72259210, 72259910,72269918	알루미늄-아연도금 강판 (Aluminium-zinc coated steel)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3.1.1 ~ 2027.3.29	○ 판정결과 : 2.5%~12.6% * '22.3.28일 최종판정 이후 12.31일까지 조치 유예, '23년부터 반덤 핑 관세 부과

### 수입금지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Anthrax prevention)
  -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탄저균 예방관련)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외교통상부
- Chewing tobacco
  -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건부

-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건부
  
-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 관련기관: 보건부
  
- Dog tracking devices
  - 주파수 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 관련기관: 기업혁신고용부
  
- Dogs
  -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 품종의 개 반입제한
  - 관련기관: 내무부
  
- Endangered Species
  -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존부
  
-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False or misleading goods
  -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소비자보호부
  
- Hazardous substance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Hazardous wastes
  - 수출입(제한) 금지명령에 따라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Laser Pointer(High Power)
  -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건부
  
- Marine mammals such as seals, whales, dolphins, porpoises
  -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존부
  
- Money
  -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현금 반입 제한

- 관련기관: 경찰청
  
-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 관련기관: 소비자보호부
  
- Objectionable material
  -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 관련기관: 관세청
  
-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Prescription medicines
  -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 관련기관: 보건부
  
- Prison Goods
  - 교도소 노동자들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제한
  - 관련기관: 관세청
  
- Radio jamming equipment
  - 미허가 주파수 방해장치 반입금지
  - 관련기관: 경제개발부
  
- Radioactive materials
  -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 Southern bluefin tuna
  -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Trout and trout products
  -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 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건부
  
- Tyres

-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경제개발부
- UN sanctions
-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외교통상부

- Unsafe goods
-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소비자보호부

- Weaponry
-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 관련기관: 경찰청

상세 품목별로는 뉴질랜드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아래 뉴질랜드 관세청 제공 금지품목 pdf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tariff-documents/the-working-tariff-document-prohibitions-and-restrictions.pdf>

[관세청 사업자 대상 수입금지 품목 안내]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import/import-prohibited-and-restricted-imports/>

[관세청 개인 대상 수입 금지품목 안내]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prohibited-and-restricted-items/>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 나.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품목
  -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 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됐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 소요기간: 6개월 이내
  - 비용: 시스템 구비에 NZ\$5,000~10,000 달러 소요, 그 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됨.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해당 인증 없이는 식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

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 규정어기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 시 해당 인증을 필수로 요구한다.

##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 인증마크 및 인증 대상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 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한다.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 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 가능하다.

###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한다. 안전 표준을 인증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해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채택한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 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
- 비용: 품목에 따라 NZ\$30,000~80,000 달러 소요

###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강제인증으로 미인증 시 제조, 수입, 유통이 불가능하다. 미백 치약, 주름개선 화장품 등과 같은 기능성 제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취급돼 Medsafe 인증이 필수이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4년 2월, 뉴질랜드 정부는 Medsafe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Medsafe 평가가 완료된 이후 Pharmac 자 금평가가 진행되었으나 두 프로세스가 이제는 동시에 진행되며 최대 9개월의 인증 소요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Medsafe 인증 절차도 간소화되어, 최소 2개 이상의 해외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Medsafe 는 30일 이내에 신규 의약품 인증을 승인하도록 요구된다.

##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 인증 마크 및 인증 대상 품목

- 상수 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 ○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해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 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 인증 발급 절차/소요 기간/비용

- 절차: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 기간: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
- 비용: 품목에 따라 NZ\$3,000~10,000 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 비용이 추가로 발생

###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 사항

- 상수도과 관련된 제품은 강제 인증으로 미인증 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 TBT

뉴질랜드의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뉴질랜드 정부 및 관련 산업 협회는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바이어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1) 건축 자재 인증 제도 BRANZ

BRANZ는 목재 소재가 대부분인 뉴질랜드 주택과 건물의 안전 규제를 위한 민간 인증이며 인증 취득에 높은 비용과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정부 규제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건설 업계에서 BRANZ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인증 없이는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계 업체가 정부에 건축 승인을 신청할 시에도 대부분 BRANZ 여부로 사용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전기 제품 인증 제도 RCM

RCM (Regulatory Compliance Mark)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전기 제품, 무선통신 장비, IT 장비 등의 안전과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마크로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RCM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이 아닌 임의 인증 제도이나, 제품 하자 문제가 생길 시 수입 업체의 면책용으로 사용되며, 인증 미취득 시 현지 제품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인증으로 볼 수 있다. 인증 절차는 호주 정부의 인증 기관 (Standards Australia)에서 전자 제품 규정 준수 인증 AS 4417을 획득한 후 호주 전기 규제 허가청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등록을 마치면 RCM 마크 획득 가능하며 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취득 기간은 약 3~6개월, 평균 취득 소요 비용은 NZ\$ 1만2천달러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뉴질랜드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은 뉴질랜드 전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의 위험성 레벨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분류)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저위험군(Level1)의 경우에는 호주/뉴질랜드표준(AS/NZS)에 부합하면 문제가 없으며 제조업체가 제품의 규격이 뉴질랜드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자체선언 할 수 있다. 이때 안전 표준을 준수한다는 자체 테스트 보고서가 필요하다. 중위험군(Level2)부터는 뉴질랜드의 ESR(Electrical Safety Regulation registration) 시스템에 등록(인증된 시험소의 시험보고서 필수)되어야 한다. 고위험군(Level3)의 경우에는 공인 인증 기관에서 엄격한 안전성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전기 안전 표준과 EMC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뉴질랜드로 전기 전자 제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의 위험군을 고려해 적합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며, RCM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의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 기타

- 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온 까닭에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 최근 5년 뉴질랜드에서는 복숭아, 감자를 원료로 한 가공 식품과 및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해 무역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조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관련 제품의 수출 기업은 정부의 규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다.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 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장한다. 이에 따

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 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http://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 ○ 관세율 조회 시스템 정보 (HS-CODE 입력 시 손쉬운 조회)

- HS CODE를 알고 있을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한다.
- 뉴질랜드로의 수입을 선택하고, 관련 코드를 Product Description에 기입한다.
- 하위코드 등이 상세 조회되면, 품목 상세와 일치하는 코드를 클릭해 상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ariff-finder.govt.nz/>

### ○ 상세한 뉴질랜드 관세율 정보 알아보기

- 이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을 위해 관세청 사이트 URL로 접속한다.
- Home 메뉴에서 상단 메뉴바 중 Business 탭을 클릭한다.
- 하위 메뉴 중에서 Tariffs 항목에서 Working Tariff Document를 선택한다
- Working Tariff Document 아래에 TARIFF 버튼을 클릭한다.
- 좌측의 사이드 메뉴에 Working Tariff Document를 클릭하면 HS-CODE 분류 체계에 따른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 상위 분류 코드 2자리 기준으로 pdf 파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하위 HS-CODE로 매칭 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 직접 접속 링크는 아래와 같으나 이는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의 메뉴 구조를 참조하여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tariffs/working-tariff-document/working-tariff-document/>

### ○ 관세율 조회 시 참고사항

- 관세율 조회를 위해서는 뉴질랜드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HS-CODE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제 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 까지 사용할 수 있다.

-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관세율 조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위의 국제 공통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한 후 위의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 관세율 확인 방법에 따라 수출하고

자 하는 제품/제형의 정보와 일치하는 HS코드를 찾아야 한다.

- 이 작업은 나라별로 운영하는 코드가 상이하므로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 물류 및 통관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해당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AU, CA, CN, CPT, HK, LLDC, TH, TPA 등의 기호가 사용된다.

- 이는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호주 및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CPTPP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 특혜관세 국가 코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아래 관세청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tariff-documents/the-working-tariff-document-introduction.pdf>

## 6. 통관 · 물류

### 가. 물류정보

#### 물류정보

#####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뉴질랜드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의 주요 항구를 통해 뉴질랜드 전역으로 운송된다. 주요 항구로는 북섬의 오클랜드, 네이피어, 타우랑가 그리고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리텔튼항) 티마루, 넬슨이 있다. 각 항구로 들어온 화물은 주로 트럭과 철도 등을 통해 내륙지역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주요 무역항별 컨테이너 처리량: 2020년 발간 뉴질랜드 항구 물동 보고서에 따르면 타우랑가항이 연간 123만 TEU(20피트컨테이너 기준) 처리하며 물동량이 가장 큰 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클랜드 항이 94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크라이스트처치(리텔튼항)가 연간 4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뉴질랜드의 주요 국제공항으로는 북섬의 오클랜드국제공항(AKL)과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국제공항(CHC)이 있다. 이들 공항은 모두 북섬과 남섬을 대표하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방문객의 이용 빈도 또한 높으며, 화물 수출과 수입의 수요 또한 큰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수도인 웰링턴에도 웰링턴국제공항(WLG)이 있으나 화물 처리보다는 승객 운송 비중이 높은 공항이다.

○ 주요 공항 물동량: 뉴질랜드 교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국제공항이 연간 수출입전체물동량의 약 87% 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크라이스트처치국제공항이 11%, 웰링턴국제공항이 나머지 1%를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의사항

뉴질랜드는 지리적 특성상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착지 항구와 공항의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낮고 철도, 고속도로 등 내륙 운송 인프라가 취약해 물류비용이 높은 편이다. 특히 철도 운송보다는 도로를 통한 운송량이 많은 편인데, 뉴질랜드 도로는 고속도로라도 편도 1차선 구간이거나 굽은 도로가 많다. 또한 각 도로의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산을 넘는 구간은 비가 많이 오면 간혹 통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나 유통사와 함께 로컬 운송과 관련해서도 꼼꼼한 점검도 필요하다.

##### 4) 기타 참고사항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뉴질랜드로의 해상무역 노선의 수출입 컨테이너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물류업체들은 화물 수요에 맞춘 선박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각 항구에서의 갑작스러운 물류 적체가 발생할 경우 선박 출항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현지 물류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출발해 뉴질랜드로 운항하는 정기 노선의 운항 일정에도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공급 일정 계획 수립 시 이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나.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

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USD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류, 식품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통관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관세청에 사전에 전자신고(Electronic Lodgement)를 해야한다. 관세청은 직접 수입통관을 위한 서비스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아래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통관신고 대행 서비스
  - 관세사(Customs broker)
  - 화물운송자(Freight forwarder)
  - TSW 전산시스템([www.tsw.govt.nz](http://www.tsw.govt.nz))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소프트웨어

## 2)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NZ\$ 1,000 달러 미만이면서 관세와 GST를 포함하여 NZ\$ 60 달러 이상의 품목에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NZ\$1,000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 업자는 상업 송장 등 관세 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뉴질랜드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ECI,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뉴질랜드에서는 NZ\$ 1,000달러 이하이면서 관세 및 GST 합계가 NZ\$ 60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해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운송 수단에 따른 부과 요금이 적용된다.

## 3)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수입 업자는 통관 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세관 인터넷 페이지(<https://www.customs.govt.nz>) 또는 EDI를 이용해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상업 송장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 서류 작성 시 기입 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 수단, 상업 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 사항, 수입 일자(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운송 비용, 보험료, 포장 비용 등) 등이다.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각 포장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 항목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뉴질랜드 세관은 항목이 NZ\$ 1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GST, 관세 또는 IETF(수입 통관 거래 수수료) 또는 관련 생물 보안 시스템 통관 부담금(BSEL)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 신고 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GST는 통관일 기준 관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해 총금액의 15%로 계산된다. IETF(수입 통관 거래 수수료)는 NZ\$ 33.03 달러가 부과되며, 여기에 농축수산물식품의 경우 1차산업부 검역 통관비(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Biosecurity System Entry Levy)가 추가된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http://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통관 시 유의사항

### 1) 통관 절차 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 2)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동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웅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메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 3)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권한

기본적으로 통관과 관련한 MPI(1차산업부)와 세관의 결정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모든 결정권한은 MPI와 세관이 가지고 있음)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제품은 언제든지 뉴질랜드 세관과 뉴질랜드 MPI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랜덤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 AION Cargo Solution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전화번호	+64-9)254-4900
이메일	cargo@aioncargo.com
홈페이지	<a href="http://www.aioncargo.co.nz/">http://www.aioncargo.co.nz/</a>
비고	교민업체

##### ○ GS Express

주소	10/61 View Road, Wairau Valley, Auckland 0627
전화번호	+64-9)444-7897
이메일	info.gsexpress@gmail.com
홈페이지	<a href="https://www.gsexpress.co.nz/">https://www.gsexpress.co.nz/</a>
비고	교민업체

##### ○ K-1TRANS

주소	13E PIERMARK DRIVE, ROSEDALE, AUCKLAND
전화번호	094152413
이메일	k1trans@hotmail.com

##### ○ EIF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전화번호	+64-9)263-0222
이메일	lundj@eif.co.nz
홈페이지	<a href="http://www.eif.co.nz/">http://www.eif.co.nz/</a>

○ Mainfreight

주소	2 Railway Lane, Otahuhu, Auckland
전화번호	+64-9)275-8136
이메일	auckland.enquiries@mainfreight.co.nz
홈페이지	<a href="https://www.mainfreight.com/nz/en/nz-home.aspx">https://www.mainfreight.com/nz/en/nz-home.aspx</a>

○ Tapper Transport

주소	373A Neilson Street, Onehunga, Auckland
전화번호	+64-9)634-4780
이메일	enquiries@tapper.co.nz
홈페이지	<a href="http://www.tapper.co.nz/">http://www.tapper.co.nz/</a>

○ NZ Express

주소	32 Kennaway Road Woolston PO Box 1362 CHRISTCHURCH
전화번호	+64-3)373 8047
이메일	docs@nzexpress.co.nz
홈페이지	<a href="https://www.nzexpress.co.nz">https://www.nzexpress.co.nz</a>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 III.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는 외국인 해외 투자법을 기반으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외국인'의 정의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 설립자가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인 회사
- 회사 지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회사의 25% 이상의 수혜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된 합작 회사, 합작 투자, 신탁 등
- 또한 투자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되며 '관계자'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공동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모두 관계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는 현지의 법률 전문가와 토지 관련 어드바이저를 통해 변경된 법률이나 규제 등에 정확한 자문을 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는 해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해 외국인 투자 위원회(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가 개별 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 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국토 정보 관리청의 외국인 투자 가이드 (<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를 통해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 ○ 투자 허가에 필요한 절차

-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로 재무 장관과 토지정보관리장관이 결정하게 되며 투자자의 신청 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은 외국인 투자 위원회(OIO)에 위임 될 수도 있다.
- 외국인 투자자 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의 요건으로는 해당 사업 및 투자에 필요한 사업 경험과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과 등의 이유로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 비자 또는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좋은 인품과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과 외국인 매수(투자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어 중요 사업 자산 또는 민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익을 법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투자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한다.
- 관련하여 투자 위원회에 대한 허가 신청 정보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 안내 사이트(<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applying-for-consent-purchase-new-zealand-assets>)에 게시 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대한 투자 위원회의 검토는 50~70 근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이 검토 기간은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장관의 의사 결정을 위해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다.

##### 3) 최근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개정 내용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11월 기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Overseas Investment Act 2005)와 관련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변경 사항에는 농지(Farm Land)투자자 및 개정된 투자자의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고 해외 투자의 역할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뉴질랜드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춰 개정되었다. 변경된 투자 법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법령 링크)<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latest/changes-overseas-investment-legislation#november-changes>

## 투자인센티브

### 1) 내국인과 동일한 투자 및 사업환경 제공

뉴질랜드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투자자와 자본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특별하게 뉴질랜드 사업자만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다.

#### ○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사업조건 제공

- 뉴질랜드는 투명한 투자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한 투자절차와 낮은 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흐름 면에서도 뉴질랜드 내외부로의 특별한 규제가 없다.
- 다만 토지 및 환경분야 등의 일부 민감한 투자부문과 와이탕이 조약에 의해 원주민(마오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적이거나 금지되어 있다.

### 2) 뉴질랜드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뉴질랜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새롭게 뉴질랜드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지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Employment)는 투자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내외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 지역 비즈니스 센터는 뉴질랜드 전역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투자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투자 초기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의 해결을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제품 마케팅 및 판매 유통경로 확보 등 실행력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 뉴질랜드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진출 지역의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무료 또는 저비용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R&D 분야 세금 인센티브 제도

- 뉴질랜드 정부는 2028년도까지 각 기업의 연구개발분야(R&D)에 대한 투자와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기 위해 R&D Tax Incentive(세액공제 인센티브) 제도를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비용지출을 높여 사회 전반에 신기술 개발과 사업육성의 혜택이 배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신청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핵심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세금감면 대상은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한 비용의 15%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보조활동(Supporting activity)비용도 전체 R&D 경비의 10%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2020년 3월 기존 RDTI(R&D Tax Intensive)의 확정된 규정을 발표하며 신청자격과 환급 한도 제한 등에 있어 완화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공식 웹사이트(<https://www.rdti.govt.nz/index.html>)를 개설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 따른 세금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정부는 적격한 R&D 지출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자격 요건: 연간 최소 R&D 지출이 NZ\$ 50,000 달러, 최대 NZ\$ 1억 2천만 달러의 적격 R&D 비용이 포함됨)

○ 혁신사업분야 사전육성자금 지원(Pre-incubation loan)

- 뉴질랜드는 특히 정보통신(ICT)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의 혁신기술분야 투자와 신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켈러헌 이노베이션 (Callaghan Innovation) 센터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이들 분야 투자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심사를 통해 사전육성 자금(Pre-incubation Loan)과 같은 보조금 지원하여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켈러헌 이노베이션은 2020년 6월 켈러헌 신규 연구개발 융자제도(R&D Loan)시행을 통해 최대 NZ\$ 40만 달러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외국인투자위원회(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OIO는 NZ\$ 1억 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이 해당하며,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중요 사업 자산 투자제한

-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그의 관계자들은 뉴질랜드 중요 자산투자에 앞서 반드시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뉴질랜드 법인 A의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데 A의 총자산의 가치가 NZ\$ 1억 달러를 초과하게 될 시 허가가 필요하다.

(사안별로 법률전문가의 가이드 필요)

- 호주 투자자들에게는 매년 투자의 한도치를 늘리는 형태로 좀 더 관대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 민감 토지에 대한 투자

- 다음과 같은 토지는 규제가 적용되는 민감 토지에 해당되며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 총면적 5ha 초과하는 비도시권 토지 (농업용 토지나 사용 목적이 상업, 산업, 주거가 아닌 토지)

- 토지 총면적 4,000㎡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면적이 4,000㎡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탁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 주거용 주택인 경우 외국인들(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 제외)은 주택구매 금지

○ 외국인의 주택구입 금지 (2018년 8월 15일 법안 통과)

- 2018년 8월 15일 외국인 비거주 투자자들의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감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할 때는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 해외 거주자 및 기업, 기관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납세번호(IRD Number)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민감토지나 자산을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바, 현지 투자자들의 자산 매입 시 전문가와 정부기관을 통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 나.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는 별도로 지정된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가 없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산산업의 육성과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다.

### 산업단지

#### ○ 혁신생태(Innovation Ecosystem)

위치	Christchurch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기관 : ChristchurchNZ</li> <li>○ 웹사이트 : <a href="https://www.christchurchnz.com/">https://www.christchurchnz.com/</a></li> <li>○ 주소 :BNZ Centre Level 3 101 Cashel Street Christchurch New Zealand</li> <li>○ 이메일 :enquiries@christchurchnz.com</li> <li>○ 전화 : +64 3 379 5575</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투자환경 (2022년 5월 확인 최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이스트처치 시는 핵심 투자분야 (Key Investment Sectors)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을 전개하고 있다.</li> <li>- 주요 유망 투자영역으로는 기술(Technology), 농업(Agribusiness), 관광(Tourism) 분야로 많은 해외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li> <li>- 2022년 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닫혔던 국경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해외로 부터 많은 투자와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li> </ul> </li> <li>○ 혁신기술분야(Technology Sector)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 경제는 1차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크라이스트처치는 하이테크 제조(High-tech Manufacturing),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및 의료 분야 혁신 기술 개발 등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달했다.</li> <li>- 디지털 단파 방송(DMR: Digital Mobile Radio)장비 생산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트 통신(Tait Communication)과 모터 동력 컨트롤 분야에 있어 글로벌 한 경쟁력을 보유한 오컴(AuCom), 회계, 교육, 에너지,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제이드(Jade Corporation)등이 크라이스트처치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기술 기반 혁신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li> <li>- 또한 이러한 혁신분야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뉴질랜드 생산자 수출 협회(NZMEA: New Zealand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캔터베리 기술협회 (CTC: Canterbury Tech Cluster), 크라이스트처치 혁신 센터 (Christchurch Innovation Precinct) 등의 지원체계도 투자 기업들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li> <li>- 나스닥에 상장된 위치 정보 기반 통합 솔루션 기업인 트림블 (Trimble Navigation LTD. 미국 캘리포니아)은 크라이스트처치에 투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토목공학, 무선 통신, 광학 계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amp;D 센터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운영하고 있다.</li> </ul> </li> </ul>

<자료원 : 크라이스트처치 비즈니스 지원센터(ChristchurchNZ)제공>

### 주요 지역별 여건

###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 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500만의 인구 중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80만 명이 증가하여 2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최대 상업 중심지답게 국가 전체 GDP의 40%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자가 폭넓은 취업 및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 오클랜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 산업의 46%, 금융·보험·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입출항의 주관 문으로 국제공항과 항구는 규모와 인구 및 물동량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노스랜드, 왕가레이, 해밀턴 그리고 타우랑가 등을 연결하는 운송로가 교차하는 물류 허브 도시이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공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상, 철도, 육로 모두 많은 화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 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8%로 나머지 지역의 평균 5.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세계 10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등학교가 있어 교육 산업 역시 크게 발달했다. 또한, 저금리와 인구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꾸준히 진행 중이며 특히 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건설 분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DATACOM, VODAFONE NZ, SPARK 등의 대형 IT 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며, 핀테크, 전자 결제 등 다양한 IT 솔루션 개발 기술을 보유한 중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많아, 특히 IT 분야 신기술 개발과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IT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뉴질랜드 최대의 경제 도시답게 해외로부터의 많은 이민자가 선호하는 도시이며 비교적 첨단 기술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 관련된 인력 수급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 타우랑가 지역(Tauranga Region)

타우랑가는 해안 도시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다. 뉴질랜드에서 44개 도시 중 열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인구는 108,882명 (2024년 4월 기준)이다. 타우랑가는 마오리어로 '휴식처 또는 정박지'라는 뜻으로 항구와 웅장한 경치로 유명하며 현지인들이 낚시, 다이빙,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도시 남서쪽 외곽의 베들레헴, 도시 남쪽 외곽의 그리튼, 타우랑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중심 도시 서쪽의 마투아, 파파모아, 웰컴 베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우랑가는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국제 무역, 문화, 원예 과학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이다. 타우랑가 항구는 총 수출 톤 수 및 효율성 측면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와йка토 지역은 낙농업의 중심지로 푸른 목초지와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헤밀턴을 중심으로 갤러허(Gallagher)와 같은 에그테크(Agritech)기업이 많이 있으며, 매년 열리는 남반구 최대의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즈(Fieldays) 개최를 통해 여러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팜 분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실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형 농장과 경작지들이 많으므로 농업기술분야 투자진출이나 현지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사업화 등에 유리한 지역이다.

###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산업이 발달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화산업은 크게 영상제작(촬영, 후반작업)과 방송 및 영화유통으로 분류되는데 웨타 FX는 촬영과 후반작업에 관련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흑성탈출, 아바타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작업을 담당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웨타FX는 미국의 ILM(Industrial Light & Magic)과 함께 할리우드 영화의 시각효과 부문 최고의 스튜디오로 평가받고 있어, 영화제작과 CG분야의 기술협력에 있어 진출 시 유리한 지역이다.

###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중심으로 혁신산업분야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혁신기술 분야를 비롯해 농업분야 및 관광분야와 관련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재건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가 재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이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 면에서 기대되는 지역이다. 지역 비즈니스 파트너(Regional Business Partner)인 크라이스트 처치 엔젯(Christchurch NZ)을 통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인할 수 있다.

## 2. 외국인직접투자

### 가. 개요 및 동향

뉴질랜드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과 투명한 법적 체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신기술 테스트 베드로 훌륭한 입지를 제공하여 외국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 관광,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들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에 속하였으나, 국민당 주도 새 연합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

\*투자 규제 완화: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Overseas Investment Act(해외 투자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build-to-rent) 개발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관련 웹사이트>

뉴질랜드 통계청 : <https://www.stats.govt.nz>

뉴질랜드 무역투자청 : <https://www.nzte.govt.nz>

###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UNCTAD의 세계 투자 보고서 2023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2년에 전년 대비 88.8% 증가했으며 US\$ 75억 3,000만 달러의 FDI 유입을 기록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뉴질랜드의 총 외국인 투자는 NZ\$ 5,312억 달러이며 57.5%가 호주(30%), 영국(12.2%), 미국(12.1%), 일본(3.0%)에서 유입되었으며 직접 투자 28.3%, 포트폴리오 투자 49.0%, 금융 파생상품 3.9%, 기타 투자 18.7%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FDI) 상위 4개국은 2023년 기준 호주(82%), 일본(9.8%), 미국(9.7%), UK(7.4%) 순으로 호주가 NZ\$ 94억 5천 8백만으로 최고 투자액을 기록했다.

####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4296	3997	4117	7903	3568

<자료원 : UNCTAD Stat>

###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순투자 유출(Net investment outflow)은 NZ\$ 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뉴질랜드의 대외투자(New Zealand investment abroad)로 인한 NZ\$ 50억 달러의 순투자 유입과 뉴질랜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Foreign investment in New Zealand)로 인한 NZ\$ 60억 달러의 순투자 유출로 순투자 유출(Net investment outflow) NZ\$ 10억 달러 기록함

- (뉴질랜드 대외 투자)'23년 2분기 뉴질랜드의 대외 투자는 NZ\$ 50억 달러의 순투자 유입 기록

\* 순투자 유입은 금융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자산 정산에 따른 NZ\$28억 달러, 기타 투자 NZ\$22억 달러, 직접투자 NZ\$6억 5천만 달러등의 순유입에 의해 발생,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NZ\$28억 달러가 유출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169	658	-1451	746	-808

<자료원 : UNCTAD Stat>

### 3. 한국기업 투자

####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2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신고 건수 총 2건으로 투자 금액 US\$ 176,000 달러를 기록했다. 신규 법인수로는 2020년 3건, 2021년 1건에 이어 2022년에는 신규법인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신고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US\$ 2,233,000 달러) 대비 2022년 91% 하락하여 US\$ 189,000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신고 건수 총 7건으로 신고 금액과 투자 금액이 각 US\$ 1,387,000 달러와 US\$ 1,502,000 달러를 기록했으며 신규 법인이 3건 등록되었다.

#####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8	1	2,233	7	2,076
2022	2	0	189	3	176
2023	7	3	1,387	8	1,50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 업종별 투자 동향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2022년 총 2건으로 '20년 10건, '21년 8건 대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은 '20년 4건, '21년 6건이었으나 '22년 1건을 기록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은 '20년 0건, '21년 1건에 이어 '22년에도 1건을 기록하였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US\$ 602,000 달러에서 US\$ 17,000 달러로 97% 하락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은 US\$ 73,000 달러에서 US\$ 159,000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2023년 총 7건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1건), 제조업(2건), 건설업(2건), 도매 및 소매업(1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건) 이 신고되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은 US\$ 731,000 달러, 제조업은 US\$ 500,000 달러, 건설업 US\$ 30,000 달러, 교육 서비스업은 US\$ 121,000 달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US\$ 119,000 달러를 기록하였다.

#####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1,398	1	1,401
도매 및 소매업	6	1	653	5	602
교육 서비스업	1	0	182	1	7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0	17	1	17
교육 서비스업	1	0	172	2	15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731	1	731
제조업	2	1	506	1	500
건설업	2	0	30	2	30
도매 및 소매업	1	1	1	1	1
교육 서비스업	0	0	0	2	1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119	1	11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o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주)대한항공

○ Ottogi New Zealand Ltd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축육, 가공식품
모기업명	(주)오뚜기

○ San Won Ltd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수산물 저장
모기업명	(주)동원수산

○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 전반
모기업명	국민은행

○ Hansol New Zealand Ltd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원목
모기업명	(주)한솔홈데코

◦ Jaico Ltd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지사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수산업
모기업명	(주)주암산업

◦ Kia Motors New Zealand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Hyundai Rotem Company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도차량
모기업명	현대로템

○ Sun&L 뉴질랜드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원목
모기업명	선창산업

○ 오스텀 뉴질랜드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유통
취급분야	임플란트 등 치과용 기기
모기업명	오스텀임플란트

○ 제일기획 뉴질랜드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법인
업종	광고 마케팅
취급분야	광고 서비스
모기업명	제일기획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자체조사>

## 4. 투자진출방식

### 가. 투자진출 형태

#### 법인

뉴질랜드는 영 연방 법률의 영향을 받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기업 지배구조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필요성, 세금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 해외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법인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자회사 성격의 법인 (Subsidiary) 설립
  - 지사(Branch)를 설립하여 해외기업으로 등록
  - 기존 뉴질랜드 회사의 인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뉴질랜드의 자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 법인등기소를 통한 법인등록 절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정하고 법인등기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 뉴질랜드에서 설립하는 자회사는 최소 1인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고 문서 등의 수발을 위한 뉴질랜드 역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법인은 해외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회사로 모회사의 주주와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의 주주는 무한 책임 회사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 법인등기소 신청 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명, 이사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별 보유비율 회사연락처를 준비 제출하면 온라인 기준 접수 후 2~3일 내에 예비 등록증을 수령 하게 된다.
- 납세자 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절차
  -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IRD)에 사업자 납세등록을 진행한다. 이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별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번호 등록을 완료 후 은행 구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회사등록증 사본과 위의 사업자 납세번호, 이사 신분증을 지참 시 대부분 당일엔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이민성과의 파견 인력 관련 비자 처리
  - 법인 설립 후 해외본사로 부터 파견될 인력 계획을 준비 이민성에 주재원들에 대한 워크 비자 신청을 준비한다.
  - 통상 이민성은 외국 투자 기업의 주재원 파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 인력의 고용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비자 심사가 진행된다.
  - 이때 파견 인력 최대한도 승인 (Approval In Principal, AIP)에 근거에 해외 인력의 파견 시마다 개별적으로 워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법인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 외국 기업은 FRA 2013에 따라 연간 신고서 외에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 연차 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NZ\$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FRA 20에 의해 자산 NZ\$ 2천만 달러, 연 매출 NZ\$ 1천만 달러 이하의 외국 기업은 재무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됐다.

## 지사

지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에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외국 기업의 회사명, 법인 등록 국가, 이사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뉴질랜드내의 사업장 주소와 문서의 수령과 제출을 담당할 최소 1인의 뉴질랜드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물리적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등록 신청 시 외국 기업의 정관도 함께 제출한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는 해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또한 뉴질랜드 이사가 해외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없다.

##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해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b>투자진출시 유의사항</b>	<p>1) 투자위험도          뉴질랜드는 소비재, 중간재 등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며, 투자환경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경제는 시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 정부 정책, 외환 및 금융시장 등에 있어, 기업 운영 리스크가 비교적 낮다.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 분야 혁신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등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등 특정 거래에 있어서는 외국인 해외투자법을 기반으로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기도 해 투자와 관련한 법규에 있어서 현지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하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법인설립 시 지배구조의 선택: 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필요성, 세금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 투자법인의 유형: 통상 현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법인 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회사 성격의 법인 (Subsidiary) 설립, 지사(Branch)를 설립하여 해외기업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뉴질랜드 회사의 인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법 주의: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설립자가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인 회사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현지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규제는 외국인 투자가의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되며 '관계자'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공동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모두 관계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해외투자는 현지의 법률전문가와 토지 관련 어드바이저를 통해 변경된 법률이나 규제 등에 정확한 자문을 구할 것을 안내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p> <p>3) 분쟁해결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외국인투자위원회(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외투자법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토정보관리청의 외국인투자자이드(<a href="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a>)를 통해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관련 이슈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외국인 투자 규정 안내 링크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s://www.linz.govt.nz/contact-us">https://www.linz.govt.nz/contact-us</a> 및 연락처 +64 4 460 0110)</p>
-------------------	---

## 다. 회사 유형

### 주식회사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Company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imited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

주식회사는 법인 즉 회사의 주주와는 별개의 존재이다. 회사 설립은 회사의 이름을 등록해서 새로운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서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 즉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많은 책임과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IRD뿐만 아니라 the Companies Office와도 매년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뉴질랜드 회사의 이사(Director) 중 최소 한 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의 이사(Director)여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인 Partnership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Sole-Trader로 뉴질랜드 IRD에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 번호(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세금 및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 KPMG 회계법인

전화번호	64-9)367 5800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010
홈페이지	<a href="https://home.kpmg.com/nz/en/home.html">https://home.kpmg.com/nz/en/home.html</a>
이메일	lisakim@kpmg.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 웰링턴지점 -주소: 1 Results Wellington 10 Customhouse Quay -연락처: +64 4 816 4500 ◦ 크라이스트처치(캔터베리) -주소 The Terrace, Level 5 79 Cashel Street -연락처: +64 3 363 5600

### ◦ 우리 회계 법인

전화번호	64-9)320-1236
주소	Unit C/ 34 Triton Drive, Albany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woori.co.nz">https://www.woori.co.nz</a>
이메일	info@woori.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 ◦ 콘솔 (Consol) 회계 법인

전화번호	64-9)21-051-8765
주소	B:Hive Building, Smales Farm, 72 Taharoto Road, Takapuna,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consolgroup.co.nz/">https://www.consolgroup.co.nz/</a>
이메일	info@consolgroup.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 오후6시

◦ Delloite 회계법인

전화번호	64-9)303 0700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2.deloitte.com/nz/en.html">https://www2.deloitte.com/nz/en.html</a>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웰링턴지점</li> <li>-주소: Level 12 20 Customhouse Quay 6011</li> <li>-연락처: +64 4 470 3500</li> <li>○ 크라이스트처치(캔터베리)</li> <li>-주소 151 Cambridge Terrace Christchurch Central 8013</li> <li>-연락처: +64 3 363 3800</li> </ul>

◦ Kenton Chambers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58-1900
주소	Level 8, 30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홈페이지	<a href="http://www.kentonlaw.co.nz/">http://www.kentonlaw.co.nz/</a>
이메일	ken@kentonlaw.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대표변호사 근무 중
비고	한국계 법무법인으로 해외투자, 노무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오용근

◦ Chapman Tripp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57-9000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홈페이지	<a href="http://www.chapmantripp.com/">http://www.chapmantripp.com/</a>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웰링턴(Wellington) 지점</li> <li>-주소: Level 17 10 Customhouse Quay PO Box 993 Wellington 6140</li> <li>-연락처: +64 4 499 5999</li> <li>○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지점</li> <li>-주소: Level 5 60 Cashel Street PO Box 2510 Christchurch 8140</li> <li>-연락처: +64 3 353 4130</li> </ul>

○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67-8000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홈페이지	<a href="http://www.russellmcveagh.com/">http://www.russellmcveagh.com/</a>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Bell Gully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916-8800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홈페이지	<a href="https://www.bellgully.com/">https://www.bellgully.com/</a>
이메일	info@bellgull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Chatfield&Co

전화번호	64-9)303-2200
주소	Level 7, 57 Symonds Stree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chatfield.co.nz">https://www.chatfield.co.nz</a>
이메일	office@chatfield.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근무 중

<자료원 : 회계/법무법인 홈페이지>

## 5. 외환

### 가. 외환제도

#### 외환 제도 개요

뉴질랜드에서의 외환거래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1984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폐지되었고 1985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완전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해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자유무역 원칙에 의거 뉴질랜드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따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외환수입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관광이나 상품수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 또는 뉴질랜드 무역협회(New Zealand Trade Enterprise)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시중은행인 ANZ, ASB, Bank of New Zealand, Kiwibank, Westpac 등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환거래 외에도 신용장, 환어음, 상업 어음, 중장기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외환 규제

뉴질랜드는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ML, FATCA 등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뉴질랜드 재무부의 외환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링크로, 외국 통화거래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뉴질랜드 재무부 외환 거래 가이드 안내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foreign-exchange-exposure>

규제가 거의 없는 외환 거래 제도 때문에 자본 및 이윤의 이전 등에서 자유로우므로 등록된 은행을 통해 대부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UN 제재 및 뉴질랜드 재정 거래 보고 규정 또는 테러 방지 규정에 따른 정보 공개 기준 적용). 또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배당을 제약 없이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수 있으며 금융 이익이나 이익의 자본 전입을 포함하여 외국 자본을 승인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2003년 제정한 외환 관리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목표와 지침들이 설정되었다.

- 외환 정책 목표: 각 부서는 승인받은 금융 도구와 파트너를 활용해 중요한 외환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해야 한다.
- 거래 위험 한도: 각 부서는 통화별로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 위험을 관리하며, 이 한도는 NZ\$ 100,000 달러이다. 또한, 보장되지 않는 전체 위험의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승인된 금융 도구 및 파트너: 거래 위험 관리를 위해 주로 현물 및 선물 외환 계약과 같은 승인된 금융 도구만 사용된다. 각 부서는 특정 신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파트너와만 거래할 수 있다.
- 은행 계좌 및 보고: 각 부서는 외화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외환 위험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준수 및 감독: 각 부서는 외환 위험을 관리할 때 1989년 공공 재무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외환 정책 문서를 검토하여 현재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현지 정부의 외환 거래와 관련한 리스크와 올바른 외환 거래 제도 안내

<https://www.fma.govt.nz/investors/ways-to-invest/foreign-exchange-trading/>

위의 링크에서 정부의 올바른 외환 거래 제도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환 거래는 위험하며 환율 변동은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 외환 거래를 선택했다면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 '무료' 혹은 '손실 없음' 등의 프로모션에 주의 해야 한다. (특히 뉴질랜드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거래 하기 전에는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외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 고문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당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 뉴질랜드에서는 외환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가 '파생 상품 발행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뉴질랜드의 규제를 받는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외환 거래 시, 제공되는 상품 설명서(PDS)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거래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나 거래 지연과 같은 시장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시장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는 손실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6. 노무

###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69뉴질랜드 달러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178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75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0.94
비고	2024년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NZ\$ 23.15(US\$ 13.67)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트레이닝 최저임금(training and starting-out)도 시간당 NZ\$ 18.16 달러에서 NZ\$ 18.52(US\$10.94) 달러로 인상되어 성인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유지된다.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뉴질랜드는 근로자가 갖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 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을 통해 고용 중에 부당 해고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 관계법은 뉴질랜드에서 노동 및 고용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서보다 고용 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계약법은 고용 관계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고용주,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 업무에 적용된다.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 계약은 개별 계약이거나 단체 계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 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이때 고용 계약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지만 엄격히 규제된다. 수습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기간이며 그 내용을 반드시 고용 계약서에 기술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한다. 만일 수습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고용 분쟁이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한편, 고용 계약법은 고용 계약서의 서면 작성 원칙과 고용주가 서명된(또는 서명할 의도의) 고용 계약서나 현재 유효한 고용 조건을 담은 문서를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NZ\$ 500 달러의 벌금이나 NZ\$ 4,000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었으며, 고용 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NZ\$ 1만 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NZ\$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근로시간

최저 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 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 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 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고용주의 호출 시에만 근무하는 노동 계약으로 최소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zero-hour contracts'가 금지됨에 따라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근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주당 근무 가능 시간 등의 내용이 일부 혹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했어도 고용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는 타당한 이유나 정확한 보상 없이 피고용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

는 시간 외 수당은 시간 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 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 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 (mediation) 서비스(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 2003)은 병가, 위로 휴가, 연간 4주의 정기 휴가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다.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10일 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10일씩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 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유급 육아 휴직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고 연차 사용 후 남은 기간만큼 국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 혁신 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http://www.mbie.govt.nz)) 또한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 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 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 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 관계 종료 시 하루 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된다.

유급 육아휴직 및 고용보호법(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은 최대 52주 간의 육아 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18주까지 유급 휴가를 포함한다. 뉴질랜드 유급 육아 휴직 제도는 고용주가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주당 최대 NZ\$ 712.17('24년 4월 기준 세금 공제 전) 달러까지 보조를 받는 방식이다.

##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 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번 이상 경고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해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정리 해고(Redundancy)는 고용 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되며 근로자의 업무가 기업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해고에는 적법한 사업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부적절한 행위, 부당 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도 정리 해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주체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할 의도로 회사를 매입했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고용주가 변경되어 근로자는 해고 상태가 된다. 이때 매각된 회사의 근로자는 기술적 실업 상태로 매수자가 고용 결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90일 수습 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수습 기간에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만약 수습 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90일 수습기간제도는 예전에는 직원이 20명 미만인 고용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3년 12월 23일 이후부터는 범위가 확장되어 모든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퇴직금

퇴직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 급여는 없으나, 일하면서 누적된 휴가비(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 노사협의회

2024년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NZ\$ 23.15(US\$ 13.67)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트레이닝 최저임금(training and starting-out)도 시간당 NZ\$ 18.16 달러에서 NZ\$ 18.52(US\$10.94) 달러로 인상되어 성인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유지된다.

## 다. 사회보장제

### 건강보험

뉴질랜드는 무상 공공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 고용보험

뉴질랜드는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실업 수당(Job Seeker Support)은 자녀, 결혼 여부에 따라 주당 최대 NZ\$ 635.10달러 가 지원된다.

### 산재보험

뉴질랜드는 별도의 산재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보험 공사(ACC)를 통해 재활 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 국민연금

뉴질랜드에서 일정 거주 기간을 만족하면 Superannuation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지급되는 연금액은 싱글일시 주당 최대 NZ\$ 463.04 이다. 연금액은 65세부터 지급되며 결혼 여부, 세금 코드 등에 따라 일부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노인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5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Kiwi Saver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의 3~8%를 적립하여 향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이다. 개인 적립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 고용주 지원금이 적립금으로 투입되어 운용되며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투자 상품 제시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 7. 세무

### 가. 조세제도

#### 법인세

법인세는 2010년 10월 1일 부터 28%로 하향 조정되어 균일 세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 투자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개인소득세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되며 반대로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이다.

- 1) 급여, 이자 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비즈니스 수익 같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IR3 연말 소득세 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 2) 세액 공제 (IECT)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 중 연 소득이 NZ\$24,000~NZ\$48,000 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된다.

\* 기본 세율은 2024년 7월 31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동 되었다. (단위: NZ\$)

- 1) 소득 0~ 14,000 (10.5%)
- 2) 소득 14,001~ 15,600 (12.82%)
- 3) 소득 15,601~48,000 (17.5%)
- 4) 소득 48,001~53,500 (21.64%)
- 5) 소득 53,501~70,000 (30%)
- 6) 소득 70,001~78,100 (30.99%)
- 7) 소득 78,001~180,000 (33%)
- 8) 소득 180,000 ~ (39%)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는 원천 징수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과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 국가 별로 다르며, 한국의 경우 각 15%, 10% 이다.

#### 부가가치세

뉴질랜드 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간접 세금이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해외 공급업체가 뉴질랜드 거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저가의 수입 상품, 서비스 및 무형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의 한 형태이다.

뉴질랜드 GST에 대한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세율: 뉴질랜드의 GST 세율은 일반적으로 15% 이나, 일부 특수한 예외나 감면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 등록 의무: GST를 부과하는 비즈니스는 뉴질랜드 세관과 GST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는 GST를 부과 및 수집하고, 동시에 GST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얻는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 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

뉴질랜드는 국내생산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담배, 주류, 유류(휘발유, 디젤)에 대해서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 외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또 수량 및 중량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 정부의 Fuel Tax 안내페이지를 통

해 확인 할 수 있다.

2024년 5월 31일부터는 도로사용자 요금(RUC)이 전기차로 확대되어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플러그인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두 1000km 당 NZ\$ 76 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플러그인 가솔린 하이브리드인 경우에는 1000km 당 NZ\$ 38 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 유류세금 안내 링크 : <https://www.mbie.govt.nz/building-and-energy/energy-and-natural-resources/energy-generation-and-markets/liquid-fuel-market/duties-taxes-and-direct-levies-on-motor-fuels-in-new-zealand/>
- 도로사용자 요금 안내 : <https://www.nzta.govt.nz/vehicles/road-user-charges>

주류는 그 농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부기관의 사이트 내용을 참조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알코올(주류) 특별소비세는 주류의 종류와 중량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 주류세금 안내 링크 : [https://www.actionpoint.org.nz/current\\_excise\\_tax\\_rates](https://www.actionpoint.org.nz/current_excise_tax_rates)

## 8.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 등으로 나뉘며 그 밖에 와인 등 지리적 표시 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 특허법(Patents Act 2013), 디자인법(Design Act 1953), 상표법(Trademarks Act 2002)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영국법과 관습법을 토대로 하며, 최근 디지털 및 전자 기술 동향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등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에는 실용 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디자인권 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 두 번까지, 각각 5년씩 갱신을 신청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최대 15년 동안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 ◦ 상표권(Trademarks)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상표는 고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며 상표를 등록하면 아래와 같은 이점들이 있다.

-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상표와 함께 ® 기호 사용
- 다른 사람이 브랜드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 상표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수록 비즈니스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상표를 다른 사람이나 비즈니스에 판매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상표권 신청에 관한 요금은 아래와 같다.

(링크) <https://www.iponz.govt.nz/about-ip/trade-marks/fees/>

\*정부는 상표권(Trade Mark)보호와 관련해 상표에 사용되는 단어, 로고, 모양, 색상, 소리, 냄새 또는 이러한 조합의 포함에 대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iponz.govt.nz/about-ip/trade-marks/>

\*뉴질랜드 지식재산권 관련한 인허가 기관은 IPONZ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w Zealand)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의 출원업무 담당하고 있다.

(링크) <https://www.iponz.govt.nz/>

## 9. 청산 및 철수

### 가. 청산 및 철수

#### 관련 법 및 절차

##### 1)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 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 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 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 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해서 뉴질랜드 시민에게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석 달 후 뉴질랜드 기업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 혁신 고용부 산하 기업 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기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 \*참고: 청산인(liquidator) 지정 및 청산인의 역할 및 의무

청산인은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회사의 자산을 매각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법원, 무담보 채권자 또는 회사 주주에 의해 지정된다.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면 청산인이 지정되며 회사의 재정 문제, 실패 원인 규명, 회사 또는 임원의 범죄 가능성 조사 등을 조사한다. 청산인은 회사의 모든 무담보 자산을 관리하고 동결한 다음 채권자와 주주에게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고 필요한 경우 청산인은 채권자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청산인은 채권자와 주주를 위해 청산 활동과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3)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4) 회사의 채무 상환 의무 분쟁에 따른 청산

만약 회사가 채무 상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의 청산은 회사로서의 모든 사업 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 급여 및 휴가 보상비와 외부 채무 순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 5) 법인 청산 절차(Liquidation Procedure)와 관련한 상세 정보

##### \*회사 설립부터 사업 종료(부도 또는 파산 포함) 절차 가이드

현지 정부의 비즈니스 지원 가이드 사이트인 Business.Govt.Nz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업 설립부터 사업 종료의 20가지 Steps에 대해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함

<https://www.business.govt.nz/getting-started/business-planning-tools-and-tips/common-business-milestones-and-how->

we-can-help/

\*청산 절차와 관련한 상세 링크

<https://companies-register.companiesoffice.govt.nz/help-centre/when-your-company-fails/what-happens-during-liquidation/#>

\*청산에 따른 기업 영향도 정보 상세 링크

<https://www.insolvency.govt.nz/business-debt/the-effect-of-liquidation-on-a-company/>

## IV. 참고정보

### 1. 시장특성

#### 가. 시장특성

##### ○ 1차 산업 발달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이 전체 무역 수출의 82% 가까이 되고, 총 GDP의 약 10.5%를 차지하는 만큼, 1차 산업이 뉴질랜드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1차 산업에서도 낙농산품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꾸준히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에서 발표한 2023년 식품 및 섬유(Food and fibre sector)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식품 및 섬유 부문은 약 NZ\$ 547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여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2024년 6월까지도 NZ\$ 543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약 36만명(전체 고용의 13.1%)의 인력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 정부와 기업의 탄소 중립 노력에 소비자들도 친환경 가치 소비로 구매 패턴 변화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청정 국가답게 기후 변화(climate change)와 관련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워키프레임 하에 능동적이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들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금융 부문 기후변화 관련 개정 법안(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또한 넷제로 펀드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소·양에 대해 가축 트림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도 ESG 경영 및 지속 가능성을 경영 방침으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소비자들 역시 친환경 가치 소비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 나. 소비자 특성

##### 소비인구

뉴질랜드 인구는 정식적으로는 약 520만 명('23년 통계청 발표 기준)이며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소비 인구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에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정당 수입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 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수한 노인복지 시스템 덕분에 고령층에서도 꾸준한 소비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16% 정도의 아시아인 인구는 2043년까지 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아시아 인구의 증가는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인 우리나라 식품 및 소비재의 시장 확대에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K-culture, 즉 한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내에서도 K-pop, K-food, K-beauty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 소비 성향

###### 1)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유행에 한 박자 느린 반응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여 변화에 빠르게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국 소비자와 달리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검소하고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어 유행을 타는 제품이나 고가품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적정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인구 구성비로 볼 때 70%가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유럽인인 관계로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던 그들의 소비 패턴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에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라도 뉴질랜드 시장에서의 수요가 미미하거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제품 선택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전에 검증된 브랜드와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회사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성향의 소비 트렌드는 실수요층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상대로 한 제품 공급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해 보이지 않는 이상 기존 제품을 대체하며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기도 하다.

반면에 한번 신뢰도를 갖게 된다면 반대로 지속적인 재구매를 마다치 않는 소비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현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자회사의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현지의 규제와 관련된 이슈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현지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입이 보수적인 소비시장을 뚫고 이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2) 특수한 세일 시즌과 온라인 구매를 적극 활용

현지 소비자들은 노트북, TV, 핸드폰의 가전제품과 가구와 같은 중고가 제품의 교체에서 즉흥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마더스 데이,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해 싸게 구입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직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가 쇼루밍의 소비 형태를 보인다. 즉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하는 소비패턴이 더욱 확산된 것이다. 또한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최저가 검색을 꼼꼼히 한 이후 슈퍼마켓이나 유통매장에서 사전에 계획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해외 직구 주문 역시 이러한 가격 비교 경쟁에서 생존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소 특이한 현상일 수 있으나, 품질 측면에서 큰 요구 사항이나 기대가 없고 빈번한 제품 교체 욕구가 있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아주 저렴한 값에 제품 구매가 가능한 중국 직구가 많이 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송 과정에서 최소 3~4주 이상이 걸리더라도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 만족도가 이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 3) 온라인 소비 증가 및 구매패턴의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했으며, 클릭앤컬렉트(Click and Collect) 방식으로 사전에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배송 서비스가 대부분 유료이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를 하는 구매자의 수가 급증하며 배송 서비스 업체 수가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고, 쇼핑을 위해 불편하게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4) ESG 소비 및 건강 중시 소비 확대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는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소비 트렌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전까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려는 소비자층이 늘고 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다. ESG 소비 실천을 위해 기업에서도 ESG 경영 실천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형 제품이나 천연 식물 기반 식품 등이 오늘날 특히 각광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무설탕 음료나 저칼로리 과자와 같이 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건강한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또는 안전하다고) 믿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뉴질랜드 현지 시장에서의 브랜드 충성도는 상당히 높다. 유기농 상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인공 감미료보다는 천연 원료가 들어간 식품을 선택하는 등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개인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 한국 상품 이미지

조선, 전자, 자동차 및 반도체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조업은 높은 기술 경쟁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을 통해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그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덕분에 해당 산업과 연관된 부문의 제품 역시 현지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힘입어 정보통신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을 지탱하는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인식되고 있다. 가령 뉴질랜드 기간 통신 사업자인 스파크(Spark)는 2020년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장비 공급업자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애그리테크(Agritech) 기업들이 뉴질랜드에 첨단 농업 기술을 수출하며 스마트 농업의 보편화를 통한 작물 생산량의 증대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농업 종사자들의 자동화된 토양·수자원 관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업은 한국의 선박 제조 기술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로, 과거 보급함인 에덴버함을 한국에서 건조한 이래, 2020년 뉴질랜드 최대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함까지 대한민국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인도한 바 있다. 아울러 전자 부분 중에서도 스마트폰, 고급형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한국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냉장고 등에 대한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2023년 기준 한국 전기 자동차가 뉴질랜드 전체 수입 전기차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 및 소비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제조한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지 대형슈퍼마켓에서도 한국 김, 라면, 만두를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뉴질랜드 내 전체 라면 수출국 중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지 백화점에 한국 화장품이 입점되어 활발히 판매되는 등 소비재 측면에서도 뉴질랜드 시장 내에서 그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더불어 한국 음악과 댄스를 다룬 텔레비전 시리즈 및 영화가 현지에 수출되어 인기를 끌 정도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지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 가. 상거래 유의사항

#### 상거래 시 유의사항

#####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의 변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가 큰 편이므로, 현재 거래 중인 기업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거래선을 바꾸게 되더라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의 평판을 먼저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 샘플,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대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한다.

한국 업체들은 바이어와의 접촉에 미숙하여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어 입장을 고려하여 거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잘 다듬어진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과 회사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바이어들은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화된 영문 웹사이트 구축은 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상담 시에는 뉴질랜드 시장에서 주로 소량 다품종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의 요청 사항을 기업이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 사항이 있다면 꼭 회신 기한을 준수하여 답변하고, 상담 시 바이어와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하여 거래의 기본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 및 반영하여야 한다. 대개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자사 제품의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장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현지 시장에서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이므로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 제품의 소매 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하여 두면 좋다.

##### 2) 대금 결제 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은 대부분의 서구 사회와 유사하며, 대금 결제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L/C보다는 T/T 방식이 선호된다. T/T 결제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수입상도 존재한다.

상품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 3) 거래 시 유의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의 시장 규모는 작지만, 이를 독자적인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정도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경영(Family Business) 형태로 운영된다. 직원별 담당 업무가 정

해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관련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이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민원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대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역으로 A/S나 고객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기업 신뢰도가 높아지면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4) 이메일 및 유선 커뮤니케이션

서구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은 '빨리빨리'이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이며, 뉴질랜드인들 역시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한국처럼 “요청 후 신속한 응대”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상대 기업의 내부 담당자와 접촉하기 위해서도 해당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셉셔니스트 등을 거쳐 해당 담당자와의 접촉 목적을 알리고 상대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담당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급하게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무례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비즈니스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적으로 최초 컨택(contact)이 이루어질 시에는 이메일을 통해 바이어가 기본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첨부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이후 유선 연락을 통해 최종 대면 접촉의 기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5) 기업 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해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받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 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 연휴를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로 2~4주 정도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 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하여 두는 것이 좋다.

뉴질랜드에서는 럭비가 유명하므로 럭비나 관련 스포츠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 경기장 “스카이 박스”에서의 접대가 현지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 나. 상담 유의사항

###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1) 복장

공식 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현지 직장(사무직)의 경우 비즈니스 캐주얼과 같은 편한 옷차림을 선호한다. 하지만 공식 행사의 경우 정장과 구두 등의 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2)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 마오리족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 등의 호칭은 대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이름(First Name)만 부른다.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

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 반갑게 대해 호감을 느끼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저지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매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사전에 결정된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뇌물을 줄 때 오히려 기업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러운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선물을 해도 기업에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복을 입은 인형이나 태극 문양 부채와 같이 대한민국 고유의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한국 전통주, K-POP 앨범, 전통 무늬가 그려진 거울 등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 4) 약속

뉴질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개인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확정된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므로 퇴근 시간(주로 오후 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 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미리 초대를 하여 참석 여부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식사 주문 시 단품 메뉴를 선호하는 한국과 달리 서구인들은 음료와 간단한 전채, 그리고 메인 식사와 디저트를 주문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음식문화를 사전에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6)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하여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 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인은 뉴질랜드식 영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적절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결코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도 오늘날 한국과 유사하게 귀엽다고 여자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 트레이드미

사이트 주소	www.trademe.co.nz
개요	트레이드미(Trade Me)는 뉴질랜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로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체 회원 수가 440여만 명으로 온라인 쇼핑을 시도하여 본 뉴질랜드 사람이라면 트레이드미 계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 수도 1백만 명에 육박한다. 트레이드미는 최근 로컬 시장의 소매점 유치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쟁력 있는 공급자(Seller)를 유치하는 등 뉴질랜드 현지 전자상거래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1999년 매출 규모: NZ\$ 3억 3,780만 달러 (2023년 기준)
주요 판매 품목	종합 마켓플레이스답게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게임기, 장난감, 영·유아용품, 미용, 생활용품, 의류, 조경 도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트레이드미는 일반적인 새 상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중 고거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기업의 인력 채용과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반 사업자들도 입점해 있지만, 개인회원들의 경우 중고 물품도 경매 형태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 울월스 (Countdown)

사이트 주소	https://www.countdown.co.nz/
개요	오uckland 및 뉴질랜드 주요 도시에 많은 수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전자 결제 및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식품은 물론이고 주방용품이나 생필품, 심지어는 아동용품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다. 오늘날 이커머스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1924년(뉴질랜드 1929년 설립)
주요 판매 품목	과일 및 채소, 육류, 생선류, 베이커리, 주류 등을 주로 판매하며, 아동용품이나 반려동물 용품, 휴지나 세제와 같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일반 식자재와 더불어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 등 자체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의 식품류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어 그 인기가 높다.
특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결제 및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에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oolworths 자체 브랜드의 상품을 보유하여 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도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여 종종 회원들에게 일부 상품을 세일가에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손꼽힌다.

##### ○ 더마켓

사이트 주소	https://themarket.com/nz/
개요	더마켓은 뉴질랜드 제일의 종합 유통기업인 더웨어하우스(The Warehouse)그룹이 2019년에 런칭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다. 기존 트레이드미가 독식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더마켓은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상품 소싱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2018년 (2019년 모바일 플랫폼 정식 출시)
주요 판매 품목	홈&리빙, 가정용품 및 컴퓨터, 의류, 장난감, 음식, 와인, 책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등을 활용해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로컬제품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수입 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특징	트레이드미가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 제품 거래도 가능한 플랫폼인 것에 반해 더마켓은 신제품만을 판매한다. 더마켓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더웨어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소싱한 제품과 뉴질랜드 전역의 유통사들의 제품이 입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 트레이드테스티드

사이트 주소	<a href="https://www.tradetested.co.nz/">https://www.tradetested.co.nz/</a>
개요	뉴질랜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은 나라이다. 트레이드테스티드는 이러한 일반 가정집에서 필요한 다양한 DIY 자재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전까지는 트레이드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다 2010년 독자적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하여 오늘날까지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2010년 7월
주요 판매 품목	주로 판매되는 제품은 가스버너, 야외 설치용 가구와 같은 아웃도어 상품, 반려동물 용품 등이다. 이외에도 아웃도어 스포츠와 관련된 농구대, 탁구대, 자전거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이 있으며, 최근 옥외 소형 창고 (SHED)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특징	뉴질랜드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색, 또는 가벼운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할 때 시공 업체를 부르는 것보다는 거주자가 직접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건축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개인 역시 집 수리에 필요한 도구나 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데 관심이 많다. 트레이드테스티드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중저가 제품들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 ○ 노엘리밍온라인

사이트 주소	<a href="https://www.noelleeming.co.nz">https://www.noelleeming.co.nz</a>
개요	노엘리밍 온라인은 뉴질랜드 제일 가전제품 판매 웹사이트로, 1973년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에 1호점을 오픈한 이래 오늘날 전국적으로 7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노엘리밍 사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1973년 "Noel Leeming Television"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
주요 판매 품목	다양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이 주요 판매 품목이다. 주로 개인이 TV,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자제품이나 주방용 가전인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오븐 등도 판매하고 있다.
특징	뉴질랜드 전역에 7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온라인 주문 시 직배송 외에도 인근 매장에서 무료로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설치가 어려운 전자제품의 경우 온라인 결제 화면에서 별도 설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트레이드디팟

사이트 주소	<a href="https://www.tradedepot.co.nz/">https://www.tradedepot.co.nz/</a>
--------	---

개요	트레이드디팻은 뉴질랜드 대표 온라인 홈&리빙용품 판매 플랫폼이다. 지역 로컬에서 제조되는 제품군 이외에 중국, 일본 등 아시아로부터 수입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2010년
주요 판매 품목	뉴질랜드 현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중 수요가 높은 세탁, 난방, 조명 관련 하드웨어와 부속 장비 등을 주로 취급한다. 특히 주방과 욕실 관련 용품들은 비교적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이 갖추어져 있다.
특징	북섬의 오클랜드와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문 시 뉴질랜드 전역으로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 피시폰드

사이트 주소	<a href="https://www.fishpond.co.nz/">https://www.fishpond.co.nz/</a>
개요	책, 영화, 장난감을 포함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의 배송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연도: 2004년
주요 판매 품목	피시폰드는 서적을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온라인 서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전자제품, 생필품, 보석류, 어린이 장난감 등과 같은 다른 제품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약 2,500만 개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
특징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WorldFront 기업에서 신설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독자적인 물류 플랫폼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아마존(Amazon)과 이베이(eBay), 월마트(Walmart)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하여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다.

#### ○ 파머스온라인

사이트 주소	<a href="https://www.farmers.co.nz/">https://www.farmers.co.nz/</a>
개요	파머스 온라인 쇼핑몰은 뉴질랜드 최대의 백화점 체인인 파머스(Farmers)가 운영하고 있으며, 중상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온라인 쇼핑몰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가구, 그릇, 어린이 용품 등 주로 호주와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생활용품과 각종 가전제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징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 대형 오프라인 백화점을 입점시킨 종합 쇼핑 브랜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할인 행사와 빠른 배송이 장점이다.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 가. 성공사례

#### 1) 청정지역 뉴질랜드 장점을 활용 가공식품생산을 통한 현지 식품시장 진출

청정지역인 뉴질랜드는 1차산업(Primary Sector)이 발달해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 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원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오뚜기는 1995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식품공장건설 추진하였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 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소스류를 뉴질랜드 현지에서 생산해 유통하고 있으며,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갈비탕, 육개장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골엑기스와 비프엑기스를 제조해 한국 오뚜기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청정지역인 뉴질랜드는 18개월~30개월 연령의 어린 소만을 도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질병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한 식품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오뚜기 뉴질랜드 공장에서는 소스, 마요네즈 등을 생산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 제조기업인 오뚜기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 2) 현지 정부의 수출장려 산업인 임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 진출

(한솔뉴질랜드)뉴질랜드는 식품원료나 가공식품 못지않게 조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나라이다. 한솔은 이런 뉴질랜드 조림사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1990년 중반 한솔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한국의 목재시장은 벌목 자재가 쉽지 않고, 벌목한 나무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뉴질랜드 원목종 라디에타 파인(Radiata Pine)종은 25년이 지나면 구조재나 건축용 자재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조림투자 사업구조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별도의 토지구매 없이 벌목권(Cutting Right)구매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1996년 뉴질랜드에 첫 조림사업 투자 진출을 기획하고 시장에 진입한 이래 실제 조림지 형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15년 첫 벌목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벌목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향후 10년간 안정적 벌목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벌목 후 외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현지 목재수출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한국 또는 주요 수요처인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SUN&L 뉴질랜드) 한국 종합목재기업인 SUN&L(선앤엘)은 1990년대 후반 뉴질랜드에 진출해 뉴질랜드 목재(Radiata Pine)를 수입하면서 현지 산림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현지법인인 SUN&L 뉴질랜드를 설립하고 조림사업을 통해 2013년 이후 100만 톤 이상의 목재를 수확하기도 했다. SUN&L뉴질랜드는 현지 조림사업경험을 통해 뉴질랜드 임업권 매입 및 판매, 임업 가치평가 및 조림지 조성 그리고 현지 투자프로세스 등 임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현지 조림사업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조림지 조성 사업에 대한 수요는 목재 수요기업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 자동차, 전력회사 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조림사업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SUN&L 뉴질랜드는 최근 현지 정부 차원에서도 조림지 조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Farm to Forestry)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최근 ESG 경영의 확산 속에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한 장기적인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어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3) 취약한 현지 제조산업에 대한 이해와 우수한 품질경쟁력으로 경쟁국의 저가공세 뚫고 성공적인 시장진출

제조 산업이 취약한 뉴질랜드에서 자국산 변압기로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ETEL사는 대부분의 변압기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한국 또한 주요 공급처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던 품목들이 하나둘씩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이나 인도산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던 변압기 주요 부품인 냉각탱크에 심각한 불량 발생해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은 2015년 3월, 한-뉴 FTA 관련 설문조사 당시 접촉한 ETEL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했으며,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 중이던 동사 구매담당자에게 해당 부품 공급이 가능한 한국기업의 추천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클랜드 무역관은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 중인 메카인더스트리사를 소개하고 업체 정보를 전달했다.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용접기 캐리어, 고가 수직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씬메탈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호주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작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변압기 냉각 탱크 샘플 제작을 의뢰 받을 수 있었고, 6월에 5종의 샘플이 ETEL사에 전달됐다. ETEL사는 중국에서 문제된 탱크 표면의 아연도금 품질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됐다.

다만, 도면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전달 오류가 있어 1차 샘플이 합격을 받지 못해 2차 샘플을 다시 제작해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오류 재발생 방지를 위해 8월, 해당사 대표 및 실무진이 직접 뉴질랜드를 방문해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 하에 ETEL사와 세부적인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2월에 2차 샘플 5종의 제작을 완료했으나 품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기존 견적보다 약 20% 높은 재견적을 제시했다. 최종 계약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무역관은 포기하지 않고 ETEL사에

높은 품질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ETEL사는 당초보다 상승된 견적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결국 20% 인상된 재건축 수용의사를 무역관을 통해 메카인더스트리사에 전달하고 곧바로 1차 시험주문량을 발주했다. 시험주문량이 성공적으로 납품되면서 신뢰도가 제고됐고, ETEL 사에서 취급하는 다른 제품에 대한 오더가 이루어지는 등 탄탄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일 때마다 양쪽을 설득해가며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무역관의 도전과 완벽한 품질을 추구한 한국기업의 노력, 그리고 이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준 현지 바이어 간의 절묘한 하모니가 이뤄낸 결과이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의 저가 공세를 뚫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답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 4) 현지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 내수기업

KOTRA 오uckland 무역관은 2015년 한-뉴 FTA 타결에 맞춰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김제품 수요가 높음을 확인했다. 이에 수출경험이 없으나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경천식품을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2015년 7월, 한국산 조미 김 수입을 희망하던 Ottogi NZ사는 KOTRA 오uckland 무역관으로 통해 경천식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바이코리아에 지시 인콰이어리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KOTRA 대전충청지원단과의 협업과 경천식품의 빠른 협조로 바이어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인 결제조건에서 양측이 견해차가 너무 커서 1차 협상이 중단됐다. 수출경험이 없던 경천식품은 기존 국내 거래 관행대로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바이어는 운송과정에서의 변질 여부를 우려해 컨테이너 하역 후 30일 이내 결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무역관과 대전충청지원단은 경천식품과 Ottogi NZ를 설득해 컨테이너 도착 후 즉시 결제조건이라는 절충안으로 합의하게 돼 2015년 11월, NZ\$4,729달러 상당의 시범 주문을 완료했다.

이미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 조미 김 제품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천식품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높은 품질로 1차 선적량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Ottogi NZ은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5월부터는 거래량을 기존 20ft FCL에서 40ft FCL로 늘리기까지 했다. 2016년 6월 29일에는 Ottogi NZ이 뉴질랜드 최대 식료품 유통체인 Foodstuffs 바이어와 함께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가해 경천식품 조미 김의 현지 유통망 입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Foodstuffs 산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New World 매장에 경천식품의 시골김 제품이 들어가게 됐다. 이 성공사례는 비록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이라 할지라도 좋은 가격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바이어에 대한 빠르고 성의 있는 대응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 내수기업들의 경우, 현지 바이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가격 책정 및 최소주문량을 고집하며 거래가 불발되는 예가 많았다. 멀리 내다보는 전략으로 바이어에게 한 번쯤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의 변신이 어렵지만은 않다.

#### 5) 수출 적기를 찾아 재도전 하여 수출 성공

한국 화장품 F 사는 2020년부터 수출 상담회등에 적극 참가하여 뉴질랜드 대형 백화점 체인인 파머스(Farmers) 에 입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백화점의 매출 저하로 신규 제품 론칭에 부정적이었던 현지 분위기로 수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KOTRA 오uckland 무역관과의 협업으로 코로나 여파로부터 회복되는 시점인 2021년 말부터 뷰티 벤더사와의 적극적인 미팅을 주선하여 2022년 7월에 파머스 온라인 및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에 성공적으로 신규 입점하였다. 현지 벤더사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 적기를 찾아 재도전하여 수출달성을 이뤄낸 사례이다. 이 밖에도 다른 한국 화장품 기업 U 사 역시 다양한 수출 상담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KOTRA 오uckland 무역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파머스에 성공적으로 수출 허가를 이뤄냈다. 우수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 위협 요인으로 수출 위기를 겪었으나, 빠른 현지 동향 파악으로 현지 대형 백화점에 수출을 달성한 케이스들이다.

#### 6) 한국 프리미엄 소주, 현지 진출 성공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확대로 한국 드라마 및 식품·뷰티에 대한 인기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급증하며, 이러한 K-문화를 체험하여 보고자 하는 현지 거주자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한류 선두 품목으로 잘 알려진 라면이나 떡볶이뿐만 아니라 현지 리쿼샵(Liquor Shop)에서도 한국 소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KOTRA 오uckland 무역관에서 파악하고,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3대 주류 유통업체 중 하나인 H사와 컨택하여 한국 소주 수요 및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무역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 소주 업체들과의 수출의사 타진 및 바이어와의 온라인 미팅을 시행하였다.

특히 <1일 1바이어> 사업을 통해 뉴질랜드 현지 바이어들과 한국의 소주 생산 업체 O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약 US\$ 6만2천 달러의 첫 성약을 달성하였다. 이는 뉴질랜드 현지의 소주 수입 수요 발굴 후 KOTRA 오uckland 무역관에서 즉각적인 밀착 지원을 통해 바이어와의 높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으며, 특히 O사가 해외 수출이 전무한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현지 바이어의 벤더 등록 과정 및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수출을 달성하였다.

### 나. 실패사례

해당 사례 없음.

## 5. 출입국 안내

### 가. 비자

#### 종류 및 발급절차

2019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경유를 포함한 뉴질랜드 일시 방문 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뉴질랜드 전자허가증인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공식 NZeTA 애플리케이션 또는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visas/visa/nzet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자 발급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NZeTA 승인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의 신설 목적은 항공기 탑승 전 심사 강화를 통해 공항 입국장 내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며 추가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국제 방문객 환경 보존 기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을 함께 징수하고 있다.

\* 2024년 10월 1일부로 국제 방문객 환경 보존 기금 (IVL)은 기존 NZ\$ 35 달러에서 NZ\$100 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변경전→ 변경후, 2024년 10월 1일부로 적용)

공식 모바일 앱(NZeTA) 을 통해 신청시 : (변경전) NZ\$ 52 달러 → (변경후) NZ\$117 (NZeTA 신청료 NZ\$17달러+IVL 기금 NZ\$100달러)

온라인을 통해 신청시 : (변경전) NZ\$ 58 달러 → (변경후) NZ\$123 달러(NZeTA 신청료 NZ\$23달러+IVL 기금 NZ\$100달러)

\*NZeTA 신청 관련 정보 및 링크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nzeta>

방문 비자 외에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에 걸맞은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워크 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길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신속하게 연락하여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예전에는 1년에 한번 특정 기간에 오픈하는 방식이었으나, 2024년 현재 해당 연도의 할당량(3000명)에 도달하면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이민성 사이트에는 신청자의 80% 가 신청 2주 내에 취득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더 오랜 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하며, '24년 10월 1일부로 기존의 NZ\$ 455 달러였던 신청 비용은 NZ\$ 670으로 인상되었다.

### 나. 휴대품 통관

#### 휴대품 면세

뉴질랜드의 면세품 판매처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품 또는 기타 상품의 총비용이 NZ\$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GST 및 관세(해당되는 경우)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면세 한도 제한이 다른 담배와 술에는 합산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의 경우 50개의 담배, 50g의 시가 또는

담배 제품, 또는 세 가지 혼합물 50g 제한이 있으며, 주류의 경우 와인 또는 맥주는 최대 4.5L, 증류주 및 기타 주류는 3병까지 가능) 납부 하여야 할 예상 지불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납부 예상 지불 금액 계산>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duty-and-gst/whats-my-duty-estimator/>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세탁하여 흙이 묻지 않은 상태여야 반입 가능하며,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사전에 신고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을 시도하다가 수하물 검사 및 X-ray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벌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50개비(2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된다. 여행 중 사용할 유모차, 망원경, 계산기, 휴대전화, 간단한 악기, 휴대용 컴퓨터 및 태블릿 PC, 라디오, 운동기구, 카메라, 휠체어 등의 물품은 여행 후 출국 시에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만일 입국 시에 부정확한 통관 신고를 한 경우 즉석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https://www.customs.govt.nz/personal/travel-to-and-from-nz/duty-free-shopping/>)이나 1차 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 기관([www.biosecurity.govt.nz](http://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역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 관세청은 NZ\$ 1,000달러 이상인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이 구매한 상품은 관세 번호(Custom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의 규정과 상세 가이드는 하단의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취 (Receive items from overseas)” 규정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관세청 규정 링크: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send-and-receive-items/receive-items-from-overseas/>

## 6. 유관기관

###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64-4) 473-9073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a>

#### ○ 주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전화번호	64-9)379-0818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1010
홈페이지	<a href="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a>

####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전화번호	64-9)303-2625
주소	7F AMI House, 63 Albert S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www.nzkoreanedu.com/">http://www.nzkoreanedu.com/</a>

#### ○ 오클랜드 한인회

전화번호	64-9)443-7000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nz.korean.net/">https://nz.korean.net/</a>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전화번호	64-4)830-1574
주소	Charles Fergusson Building 34-38 Bowen St Pipitea,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s://www.mpi.govt.nz/">https://www.mpi.govt.nz/</a>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전화번호	64-4)472-0030
주소	15 Stout Street, Wellington 6011
홈페이지	<a href="https://www.mbie.govt.nz">https://www.mbie.govt.nz</a>
비고	기업 운영, 고용, 기술 혁신 담당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전화번호	64-4)916-2426(무료: 0800-225-537)
주소	Level 10 Grant Thornton House 215 Lambton Quay,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s://www.epa.govt.nz/">https://www.epa.govt.nz/</a>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전화번호	64-4)890-1500
주소	12-22 Hawkestone Street, Thorndon,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s://www.ird.govt.nz/">https://www.ird.govt.nz/</a>

○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전화번호	64-4)931-4600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s://www.stats.govt.nz/">https://www.stats.govt.nz/</a>

○ 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Advisers New Zealand Ltd)

전화번호	64-9) 379-0219
주소	Grafton, Level - 6/71 Symonds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홈페이지	<a href="https://nzimmigration.info/?utm_source=gmb&amp;utm_medium=referral">https://nzimmigration.info/?utm_source=gmb&amp;utm_medium=referral</a>

○ 정부정보서비스(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주소	45 Pipitea Street Thorndon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www.data.govt.nz/">http://www.data.govt.nz/</a>

○ 한국 뉴질랜드 경제인 협의회(Korea New Zealand Business Council)

전화번호	64-4)475-8955
주소	PO Box 28041,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knzbc.nz/">http://knzbc.nz/</a>

○ 뉴질랜드 헤럴드(The New Zealand Herald)

전화번호	64-9)373-6400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entral,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nzherald.co.nz/">https://www.nzherald.co.nz/</a>

○ 텔레비전 뉴질랜드(TVNZ)

전화번호	64-9)916-7000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tvnz.co.nz/">https://www.tvnz.co.nz/</a>

○ 뉴질랜드 미디어웍스 (MediaWorks NZ)

전화번호	64-9)928-9000
주소	3 Flower St, Eden Terrace,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mediaworks.co.nz/">https://www.mediaworks.co.nz/</a>

○ 라디오 뉴질랜드(Radio New Zealand)

전화번호	64-4)474-1999
주소	Level 2/155 The Terrace, Wellington Central,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s://www.radionz.co.nz/">https://www.radionz.co.nz/</a>

○ 뉴질랜드무역투자협회(New Zealand Trade Enterprise)

전화번호	64-9)354 9221
주소	PO Box 2364, Shortland Stree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nzte.govt.nz/">https://www.nzte.govt.nz/</a>

○ 뉴질랜드연방은행

전화번호	64-4) 472 2029
주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2 The Terrace PO Box 2498 Wellington 6140
홈페이지	<a href="https://www.rbnz.govt.nz/">https://www.rbnz.govt.nz/</a>

○ 캘러헌R&D투자지원기관(Ccallaghan innovation)

전화번호	64) 0800 422 552
주소	69 Gracefield Road Lower Hutt 5010 Wellington
홈페이지	<a href="https://content.callaghaninnovation.govt.nz">https://content.callaghaninnovation.govt.nz</a>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7. 물가정보

###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66NZ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8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5.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5.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0.9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2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1.27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850
8	의료	항생제	12정	15.910
9	교통	오클랜드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170
10	교통	오클랜드 전철요금	기본요금	2.34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23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2.27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81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3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2.070
16	여가	담배	1갑	22.210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최저가)	360ml	7.640
18	임금	최저임금	시간	14.07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5909.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p	4.750
21	식품	쌀	1kg	1.870
22	식품	식빵	한묶음	2.490
23	식품	고기	1kg	12.450
24	식품	계란	10개	5.800
25	식품	우유	1L	2.490

26	식품	식용유	1L	4.39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190
28	주거	수도세	m <sup>3</sup>	1.360
29	주거	가스비	1kWh	0.06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186.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37.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64.0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00km	1.870
34	통신	국제 전화 요금(스파크사, 한국으로 발신 기준)	분	0.28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24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43.570
37	서비스	TV 수신료 (뉴질랜드 별도의 수신료 서비스 없음)	1개월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2.0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18.67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2.000

<자료원 : RBNZ, 뉴질랜드 교육부, MBIE, Countdown, BP, Auckland Transport 외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 8. 출장정보

### 가. 환전

#### 통화체계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뉴질랜드 지폐는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환전방법

환전은 평일 영업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며 공항이나 호텔에서도 쉽게 환전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NZ\$ 20달러 이상의 금액은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상금으로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는 은행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까지 차이),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의 경우 사전에 공항에서 NZ\$ 100달러 정도는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용카드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라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되어 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 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점 또는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일반적으로 1%~2% 수준의 신용카드 수수료(sur charge)가 부과되며, 오늘날 여행자 수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나. 교통

#### 교통상황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토지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심은 항상 차들이 많고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최근 오클랜드의 경우 도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도로의 노선이 자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조회된 지도상의 경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버스

뉴질랜드에서 버스는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며 익스프레스 버스, 환승 제도 등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밤 10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버스 운행이 크게 변경되므로 사전에 버스 시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클랜드 지역 대중교통 정보는 Auckland Transport(<https://at.govt.nz/bus-train-ferr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AT Bus와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근 버스 정류장 정보 및 정류장별 버스 라우팅 정보와 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Track My Bus 앱에서도 오클랜드 전역의 버스 노선과 전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택시

오늘날 많은 택시 회사들이 오클랜드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에, 오클랜드 내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도로변에 대기 중인 택시는 거의 없다. 이는 오클랜드 내 택시들이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즘은 지역과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오클랜드 공항에서 도심(CBD)까지의 요금은 택시의 종류에

따라 대략 NZ\$ 38~75달러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된다. 뉴질랜드 택시 역시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늘어 일반 택시보다는 모바일 호출을 기반으로 한 택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이 경우 우버(Uber)나 디디(Didi)와 같은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다. 통신

### 핸드폰

주 통신사로 스파크(Spark, 구 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degree)가 있는데,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 조건이 상이하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뉘고 상세 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별정통신 업체인 Skinny(Spark 망 사용), Warehouse Mobile(2degree 망 사용) 등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했다.

### 인터넷(와이파이)

한국에서 개인용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지참하여 올 경우 뉴질랜드 전압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호텔 객실 내에는 네트워크 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편적이지 않았던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 현재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도서관, 카페 등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느린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라. 관광명소

### ○ 오클랜드 동물원(Auckland Zoo)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Motions Rd, Western Springs, Auckland 1022
운영시간	오전 9:30 ~ 오후 5:3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130여 종의 동물 900여 마리를 관람할 수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동물원이다.
비고	동물 체험 프로그램 등은 공식 웹사이트( <a href="http://www.aucklandzoo.co.nz/">http://www.aucklandzoo.co.nz/</a> )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 ○ 테푸이아(Te Puia)

도시명	로토루아
주소	Hemo Rd, Tihiotonga, Rotorua
운영시간	8:00~17: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에 있는 간헐천 관광지이다.

비고	<a href="https://www.newzealand.com/kr/plan/business/te-puia/">https://www.newzealand.com/kr/plan/business/te-puia/</a>
----	---

#### ○ 와이토모 반딧불이(글로우웜) 동굴(Waitomo Glowworm Caves)

도시명	와이카토
주소	39 Waitomo Village Road, Waitomo Caves 3977
운영시간	오전 8:30 ~ 오후 5: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동굴로, 오늘까지도 그 내부가 잘 보존 되어 있다. 반딧불이 서식지를 감상하며 보트를 탈 수 있는 투어가 잘 마련되어 있다.
비고	투어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트 체험은 웹사이트( <a href="https://www.waitomo.com/glowworms-and-caves/waitomo-glowworm-caves?utm_source=google&amp;utm_medium=GMB&amp;utm_term=waitomoglowwormcaves">https://www.waitomo.com/glowworms-and-caves/waitomo-glowworm-caves?utm_source=google&amp;utm_medium=GMB&amp;utm_term=waitomoglowwormcaves</a> )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동굴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스카이라인(Skyline Rotorua)

도시명	로토루아
주소	178 Fairy Springs Rd. Fairy Springs, Rotorua
운영시간	9:00~22: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스카이라인 로토루아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로토루아 호수와 시내 및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루지, MTB 바이크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공간이다.
비고	<a href="https://www.skyline.co.nz/en/">https://www.skyline.co.nz/en/</a>

#### ○ 스카이 타워(Skytower)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2 Victoria St. W Auckland
운영시간	9:00~22: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높이 328m로 남반구 전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220m 높이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번지점프 체험도 가능하며,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비고	<a href="https://skycityauckland.co.nz/">https://skycityauckland.co.nz/</a>

#### ○ 켈리 탈튼 수족관(Kelly Tarlton's Sea Life)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3 Tamaki Drive, rkei Auckland
운영시간	9:30~17: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 해양 탐험가인 켈리 탈튼이 1985년 설립한 수족관이다. 120m의 관람 통로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관람객은 머리 위로 움직이는 바다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방문하는 오클랜드 내 명소이기도 하다.

#### ○ 무리वाई비치(Muriwai Beach)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469 Motutara Road, Muriwai Beach, Auckland
명소소개	무리वाई 비치는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지역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가넷 서식지와 검은 모래, 서핑 등으로 유명하다. 무리वाई 비치는 낚시꾼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바위 낚시가 위험한 편이다. 무리वाई 비치 주변을 거닐 수 있는 트래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핑 보드 강습, 승마 강습 등도 가능하다.

<자료원 : 뉴질랜드 관광청 홈페이지 (<https://www.newzealand.com/>)>

### 마. 식당

#### - 현지식당

##### ○ 세일즈(Sails )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78-9890
주소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가격	NZ\$ 30달러 이상
영업시간	12:00~14:30, 18:00~21:00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West Haven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 오르비츠(Orbit 360° Dining)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63-3000
주소	72 - 78 Victoria St W, Auckland

가격	NZ\$ 30달러 이상
영업시간	11:30~14:30, 17:30~21:3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스카이 타워 전망대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오클랜드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 저녁 시간에는 대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 프레고(Prego)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76 3095
주소	226 Ponsonby Rd, Ponsonby, Auckland
가격	NZ\$ 25달러 이상
영업시간	12:00~23:00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오클랜드 베스트 레스토랑에도 선정된 이탈리아 식당으로, 현지인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 ○ 옥시덴탈(The Occidental)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00-6226
주소	6-8 Vulcan Lane Auckland Central
가격	NZ\$ 30달러 이상
영업시간	7:30~23:30 (주중) 9:00~2:00 (토), 9:00~23:30 (일)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뉴질랜드 흥합을 사용하는 요리와 스테이크 요리를 메인으로 하며, 현지인 및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식당이다.
비고	매주 월요일에는 반값으로 일부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 스위시버클러 레스토랑 & 바(Swashbucklers Restaurant & Bar)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07-5979
주소	23B Westhaven Drive, Auckland CBD, Auckland 1010
가격	NZ\$ 30~50달러 (2인 이상 플래터의 경우 NZ\$ 80~160달러)

영업시간	오후 12:00 ~ 22: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소개	오uckland 항구 부근에 위치한 해산물 요리 전문 식당으로, 넓은 실내 공간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어 뉴질랜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 - 한국식당

### o 동대문(Dong De Moon)

도시명	오uckland
전화번호	09-309-3309
주소	42D High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가격	NZ\$ 약 20~50달러 (1인 식사 메뉴의 경우 NZ\$ 20~3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30 ~ 오후 23:00 (또는 익일 자정) *매주 월요일은 오후 17:00 오픈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한국의 흥대와 유사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으며, 식사 메뉴부터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한국 식당이다. 매운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방문하며, 오전에 오픈하기 때문에 근처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한다.

### o 원소주(One Soju Korean Restaurant)

도시명	오uckland
전화번호	09-368-1200
주소	22 Durham Street West, Auckland CBD, Auckland 1010
가격	NZ\$ 약 25~55달러 (1인 메뉴의 경우 대개 NZ\$ 40달러 이내)
영업시간	오후 5:00 ~ 익일 오전 1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식사와 안주를 판매하는 한국 식당으로, 오uckland CBD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뉴질랜드 현지인들과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 o 화로 (Farro )

도시명	오uckland
전화번호	09 379 4040
주소	5 Lorne Street, Auckland CBD
가격	1인 메뉴는 NZ\$ 18-39달러이며, 세트 메뉴는 NZ\$ 99~175달러 정도로 다양하다.

영업시간	<시티점>
	[점심]
	월요일-토요일: 11.30 - 14.30
	[저녁]
	월요일-목요일 : 17.30 - 21.30
	금요일-토요일 : 17.30 - 22.30

○ 반상(반상)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02-1838
주소	1C, 47 High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가격	NZ\$ 15달러 이상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캐주얼한 한국 식당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식이 준비되어 있다.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라마다 스위트 빅토리아호텔(Ramada Suites Victoria Street West)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47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Central, 1010 Auckland
전화번호	(64 9) 971-50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wyndhamhotels.com/ramada/auckland-new-zealand/ramada-suites-victoria-street-west/overview?CID=LC:RA::GGL:RIO:National:50470&amp;iata=00093796">https://www.wyndhamhotels.com/ramada/auckland-new-zealand/ramada-suites-victoria-street-west/overview?CID=LC:RA::GGL:RIO:National:50470&amp;iata=00093796</a>
숙박료	NZ\$ 200달러 이상
소개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 빅토리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호텔

○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Grand Millennium Hote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1 Mayoral Dr, Auckland
전화번호	(64 9) 366 30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millenniumhotels.com/en/auckland/">https://www.millenniumhotels.com/en/auckland/</a>
숙박료	NZ\$ 250달러 이상
소개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 스카이 시티 호텔(SkyCity Hotel Auckland)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Corner Victoria and, Federal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전화번호	09-363-6000
홈페이지	<a href="https://www.skycityauckland.co.nz/">https://www.skycityauckland.co.nz/</a>
숙박료	NZ\$ 220달러 이상
소개	레스토랑, 수영장,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호텔이다.

○ 크라운 플라자 호텔(Crown Plaza Hote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28 Albert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전화번호	09-302-1111
홈페이지	<a href="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us/en/auckland/aklnz/hoteldetail?cm_mmc=Google+Maps-_-CP-_-NZ-_-AKLNZ&amp;utm_source=Auckland&amp;utm_medium=googleplaces">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us/en/auckland/aklnz/hoteldetail?cm_mmc=Google Maps-_-CP-_-NZ-_-AKLNZ&amp;utm_source=Auckland&amp;utm_medium=googleplaces</a>
숙박료	NZ\$ 180달러 이상
소개	스카이 타워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로, 항구 및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비고	일부 객실 투숙객의 경우 호텔 내부에 있는 클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칵테일 바, 레스토랑, 회의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업무 및 손님 접대에 용이하다.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하카 롯지 오클랜드(HAKA LODGE AUCKLAND)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373 Karangahape Road, Auckland CBD
전화번호	+64 (09) 379 4559
홈페이지	<a href="https://hakalodges.com/auckland/">https://hakalodges.com/auckland/</a>
숙박료	NZ\$ 60달러 이상
소개	배낭 여행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 호스텔

○ YMCA 호스텔(YMCA Hoste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0 Pitt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전화번호	09-303-2068
홈페이지	<a href="https://www.ymcaaccommodation.org.nz/accommodation/ymca-hostel">https://www.ymcaaccommodation.org.nz/accommodation/ymca-hostel</a>
숙박료	NZ\$ 100달러 이상
소개	혼성 및 여성 전용 도미토리를 제공하는 숙소로, 공용 주방, 욕실 및 라운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 단기 투숙객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이다.

<자료원 : 각 호스텔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유흥가 부근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빈집이나 차를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일부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들어 총기를 사용한 범죄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발생한 단순 절도 사건이나 접촉 사고는 사실상 경찰을 통한 사건 해결이 어렵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하여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충돌사고 및 접촉 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하 여야 한다. 동시에 주위에 있는 목격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긴급 보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회사와의 연락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면 된다. 피치 못할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 시에는 항상 신분 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 정비 등록증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2) 여권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실물 복사본 및 사진 또는 PDF 형태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과 대사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 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여행 증명서만으로도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 분실신고는 여권을 잃어버린 당사자 본인이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서(Lost Property Report)"와 함께 직접 대사관 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 9. 생활정보

### 가. 주택

####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뉴질랜드 내 임대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매우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되어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으며, 이를 임대인이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기관에 예치하고,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데 사용한다.

주택 전체를 임차하지 않고 방 하나만을 임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기와 가구가 구비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대개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 및 전출 시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하여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 구매 시에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거래 시 사전에 할인받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줄었으나 외국에 거주하던 자국민이 대거 입국했으며, 주택 공급 대비 수요 부족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 2024년 2월까지도 전반적인 임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거래 가격의 상승과 비교하면 임대 가격의 상승은 미비한 편이나 여전히 꾸준한 임대 수요로 인해 주택 임대 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전화

뉴질랜드의 국가 전화 번호는 +64 이다.

##### ○ 유선 전화-Landline

보편적으로 오늘날 유선 전화는 인터넷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통신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유선 전화+인터넷으로 함께 신청 시 관련 서비스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유선 전화를 사용하려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유선 전화 공급 업체는 아래와 같다.

2degrees, Orcon, Slingshot, Spark, Vodafone

##### ○ 휴대폰-Mobile

뉴질랜드의 휴대폰 번호는 일반적으로 통신사 업체에 따라 021, 022, 027, 029로 시작된다. 주요 통신사는 보더폰, Spark, 2degrees, warehouse 등이 있다.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SIM 카드를 구입하면 즉시 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충전제의 경우 희망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오클랜드와 같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Coverage가 꽤 양호한 편이지만, 외딴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네트워크망이 잘 잡히지 않는 곳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무료 전화 번호

공공 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0800 또는 0508로 시작하는 번호는 대개 무료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발신이 가능하다.

##### ○ 선불 전화 카드 사용

무료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함에 따라 선불카드 사용자는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 다양한 선불 전화 카드가 판매되고 있다. 이는 우체국, 슈퍼마켓, 통신사 및 호텔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NZ\$ 5~50달러 정도이다. 공중전화 또는 휴대전화

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압/플러그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에서 가져온 기기 및 충전기의 직접 사용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하여 기존 플러그 코드에 부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인마트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가능하며, 최근에는 Warehouse와 같은 대형 잡화점에서도 어댑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식수

뉴질랜드 수도물은 식수로 사용 가능하다. 레스토랑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식수는 대부분 수도물이며 생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 구매방법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해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http://www.turners.co.nz))에 참가해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 혹은 Trade Me와 같은 뉴질랜드 온라인 플랫폼 ([www.trademe.co.nz](http://www.trademe.co.nz))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채무 현황, 사고 여부,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carjam.co.nz](http://www.carjam.co.nz))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나 채무나 사고 등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경우 현지 주문량이 많아 인도 시까지 5~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차량가격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소유 비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호 무역 종료 시점에 현지 차량 조립 공장이 폐쇄되며 현재는 차량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에서 판매되는 차량 모델 및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AA New Car Prices: <https://www.aa.co.nz/cars/buying-a-car/car-buying-guide/new-cars/new-car-prices/>

### 운전면허 취득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이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 시험 면제 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현지에서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여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다. 은행 계좌 개설

### 주요은행

뉴질랜드의 모든 은행은 반드시 Reserve Bank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 뉴질랜드 은행은 다음과 같다.

- ANZ Bank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Bank of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Westpac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ASB Bank: 호주계 은행
- Kiwi Bank: 뉴질랜드 은행

뉴질랜드 은행은 거래 시 여러 가지 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은행 선택 시에는 은행 수수료와 자금 이체 방법, 거주지 주변에 지점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 이체할 수도 있다. 다수의 한국인 직원이 있는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및 ANZ 등의 은행에서도 한국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유선으로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좋으며, 구비 서류로는 주소지 증빙 서류(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각종 거래 명세서 등), 영문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이 필요하다. 주소지 증빙의 경우 은행에서 해당 주소로 직접 발송한 주소지 증빙 우편물을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동반된다. 최근에는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원 증명 및 관련 절차를 미리 처리한 후 은행에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일부 업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민원 24시(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ANZ=에서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주소지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통장 개설 후 카드 수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금액의 비상금을 남겨두고 돈을 예치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뉴질랜드 정부의 외국인 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무비자 외국인에 대한 은행 계좌 개설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으로,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와 같은 적합한 비자 취득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라. 교육

### - 주요 국제학교

#### ○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IB 준비과정, IB Diploma
학비	NZ\$ 33,000달러
홈페이지	<a href="http://www.aic.ac.nz">http://www.aic.ac.nz</a>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 현지학교

o Auckland Grammar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NCEA, CIE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a href="https://www.ags.school.nz">https://www.ags.school.nz</a>

o Epsom Girls Grammar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NCEA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a href="https://www.eggs.school.nz/">https://www.eggs.school.nz/</a>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o Waitakere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55-75 Lincoln Rd, Henderson, Auckland
전화번호	09-839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o North Shore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24 Shakespeare Rd, Takapuna, Auckland
전화번호	09-486 8900
진료과목	종합병원

o Auckland City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 Park Rd, Grafton, Auckland

전화번호	09-367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 쇼핑센터/몰/백화점

#### ○ 실비아 파크 쇼핑 센터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86 Mount Wellington Highway, Mount Wellington, Auckland 1060
홈페이지	<a href="https://www.sylviapark.com/retail">https://www.sylviapark.com/retail</a>
비고	푸드코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어린이 놀이 공간, 슈퍼마켓 등을 갖춘 대형 복합 쇼핑몰

#### ○ 글렌필드 쇼핑몰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Corner Glenfield Road & Downing Street, Glenfield, Auckland 0629
홈페이지	<a href="http://glenfieldmall.co.nz/">http://glenfieldmall.co.nz/</a>
비고	오클랜드 내 글렌필드에 위치한 쇼핑몰로, 의류 및 식음료를 주로 판매함

#### ○ Smith and Caughey's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53-261 Queen S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smithandcaugheys.co.nz/">https://www.smithandcaugheys.co.nz/</a>

#### ○ Farmers

도시명	오클랜드 및 주요도시
주소	뉴질랜드 전역 58개 매장 보유
홈페이지	<a href="https://www.farmers.co.nz/">https://www.farmers.co.nz/</a>

#### ○ Westfiled

도시명	오클랜드 및 주요도시
주소	219 Don McKinnon Drive Albany AUCKLAND 0632
홈페이지	<a href="https://www.westfield.co.nz/">https://www.westfield.co.nz/</a>
비고	오클랜드 및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식품점

○ 왕마트 (Wangmart)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98 Rosedale, Albany,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로얄 세이브 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61 Hobson St,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아이마트(i-Mart)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5 Wakefield Street,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D&N Mart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6 Wakefield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취급 식료품	아시아 식품, 각종 식자재, 가공식품 등

○ Woolworths (전 Countdown)

도시명	오클랜드 포함 뉴질랜드 전 지역
주소	19-25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CBD, Auckland 1010 (Victoria Street 점)
취급 식료품	과일·채소 등 각종 식자재, 베이커리, 가공식품, 즉석식품 등

○ New World

도시명	오클랜드 포함 뉴질랜드 전 지역
주소	125 Queen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0620 (Queen Street 점)
취급 식료품	식자재, 가공식품, 즉석식품 등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이벤트시네마(EventCinema)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91/297 Queen S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eventcinemas.co.nz/cinema/queen-street#G+">https://www.eventcinemas.co.nz/cinema/queen-street#G+</a>
소개	오클랜드 시티 중심가에 있는 영화관

○ 글렌필드 레저 센터(Glenfield Pool and Leisure Centre)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3-77 Bentley Avenue, Glenfield, Auckland 0629
홈페이지	<a href="https://aucklandleisure.co.nz/locations/glenfield-pool-and-leisure-centre/">https://aucklandleisure.co.nz/locations/glenfield-pool-and-leisure-centre/</a>
소개	수영장, 스파, 사우나, 헬스 등을 즐길 수 있는 글렌필드 레저 센터

○ 시티 도서관(Central City Library)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44-46 Lorne St, Auckland,
홈페이지	<a href="https://www.aucklandlibraries.govt.nz/pages/library.aspx?library=6">https://www.aucklandlibraries.govt.nz/pages/library.aspx?library=6</a>
소개	오클랜드 시티 중심가에 있는 도서관

○ 알버트 공원(Albert Park)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33-43 Princes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홈페이지	<a href="http://aucklandcouncil.govt.nz">aucklandcouncil.govt.nz</a> (오클랜드 의회에서 관리)
소개	오클랜드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로, 조깅 코스, 스케이트 연습장, 놀이터 등이 갖추어져 있어 뉴질랜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여유를 즐기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

○ 시티 피트니스(CityFitness)

도시명	오�클랜드 및 뉴질랜드 주요 도시
주소	239 Queen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Queen Street 점)
홈페이지	<a href="https://www.cityfitness.co.nz/">https://www.cityfitness.co.nz/</a>
소개	다양한 운동 시설을 갖춘 체육관으로, 뉴질랜드 내 총 48개 지점 보유 (2024.4 기준)
비고	멤버십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New Year's Day	2024-01-01	2024-01-01
New Year's Day	2024-01-02	2024-01-02
Auckland Anniversary Day	2024-01-29	2024-01-29
Waitangi Day	2024-02-06	2024-02-06
Good Friday	2024-03-29	2024-03-29
Easter Monday	2024-04-10	2024-04-10
ANZAC DAY	2024-04-25	2024-04-25
King's Birthday	2024-06-03	2024-06-03
Matariki	2024-06-28	2024-06-28
Labour Day	2024-10-28	2024-10-28
Christmas Day	2024-12-25	2024-12-25
Boxing Day	2024-12-26	2024-12-26

## 10. KOTRA 무역관 안내

### ○ 오클랜드 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주소: Level 16, 120 Albert St, Auckland
- 대표 전화: +64-9-373-5792
- 팩스 번호: +64-9-373-2952
- 이메일: akl\_ktc@kotra.or.kr

#### 공항-무역관 이동

- 오클랜드 국제공항
  -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한 후 입국심사 및 수하물 검사를 한다.
  - 특히 식품 소지 시 검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오클랜드 공항버스 (Skydrive)
  - 요금: NZ\$ 18달러 (학생 요금 NZ\$ 15달러, 30분 간격으로 운영)
  - 첫 버스는 오전 5:00에 운행되며, 마지막 버스는 오후 22:30에 출발한다.
  - 공항에서 탑승하여 오클랜드 스카이 시티(Auckland Sky City) 정류장에서 하차하며, 하차 지점에서부터 무역관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 일반 택시
  - 택시 운임 요금은 약 NZ\$ 75달러(Corporate Cabs 기준임)이다.
  - 무역관 입주 건물 (Huawei Centre, 120 Albert Street) 앞에서 하차한다.
- 우버(Uber)
  - 우버(Uber)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로 금액이 상이하나 대개 무역관에서 오클랜드 공항까지 NZ\$ 50~70달러 정도 소요된다.
- 셔틀 미니밴
  - 셔틀 운임: 오클랜드 시티 센터(City Centre) 도착 기준 최저 가격은 NZ\$ 30달러(1인 기준)이다.  
(요금은 탑승 인원의 수 및 수하물의 부피에 따라 변동)
  - 무역관 인접 크라운 플라자 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에 하차 후 무역관이 입주하여 있는 옆 빌딩(Huawei Centre)으로 이동한다.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 예약 시간대와 인원수 및 수화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뉴질랜드 유기농 및 친환경 전시회 [Go Green Expo]	2024-04-06 ~ 2024-04-07	Eventfinda Stadium, North Shore	Go Green Expo
뉴질랜드 허치윌코 보트쇼 [Hutchwilc boatshow]	2024-05-01 ~ 2024-05-31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Premiere Exhibitions Ltd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자기계 전시회 [EMEX]	2024-05-28 ~ 2024-05-30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XPO EXHIBITIONS LTD
뉴질랜드 농업 전시회 [Fieldays]	2024-06-12 ~ 2024-06-15	Mistery Creek Event Centre(Hamilton)	The New Zealand National Agricultural Fielday Society
뉴질랜드 오클랜드 식품 전시회 [The Food show]	2024-07-25 ~ 2024-07-28	ASB Showgrounds (Auckland Showgrounds)	XPO Exhibitions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